www.me.go.kr/daegu

2023

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

2023. 11.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Contents

01. 위반 사례 5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례 7
2. 물환경보전법 위반사례 31
3.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 43
4.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례 59

02. 기술지원 사례 79

03. 환경법령 개정 사항 87

04. 부록 121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안 123
- 배출사업장 공통 체크사항 123
- 대기배출시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대기환경보전법」 124
- 비산먼지 발생사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대기환경보전법」 127
- 폐수배출시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물환경보전법」 129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폐기물관리법」 132

01

위반사례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화학물질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례

순번	법령	위 반 내 용
1	제16조제1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2	제23조제1항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3	제23조제1항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4	제23조제2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① 배출시설의 증설 미신고
5	제23조제3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② 신규 대기오염물질 검출
6	제23조제2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③ 방지시설의 증설 미신고
7	제23조제3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④ 그 밖의 경우(일일조업시간 변경)
8	제26조제1항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9	제31조제1항제1호	대기오염물질 공기희석 배출
10	제31조제1항제1호	방지시설 미가동 ①
11	제31조제1항제1호	방지시설 미가동 ②
12	제31조제1항제2호	대기 가지배출관 설치
13	제31조제1항제3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식,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
14	제31조제1항제4호	방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고장,훼손 방치
15	제31조제2항	운영기록부 미작성, 거짓작성
16	제39조제1항	자가측정 미이행 ①
17	제39조제1항	자가측정 미이행 ②
18	제40조제1항	환경기술인 미임명
19	제40조제2항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20	제77조제1항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21	제43조제1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2	제43조제1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23	제43조제1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위반사례 1	
위반사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초과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물질만 해당됨)**
행정처분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위반내용	▶ 대기배출시설(용융용해시설)과 연결된 방지시설의 굴뚝 측정공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크로뮴화합물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 ▶ 측정결과: 0.425mg/S㎥ (배출허용기준: 0.4mg/S㎥)
관련사진	

④시료채취	현 장 기 상	날 씨	기 온	습 도	기 압	풍 향	풍 속
		맑음	4.0 ℃	23 %	764 mmHg	북북서 풍	4.0 m/s
	배 출 가 스	배출가스 유량		실측산소농도		표준산소농도	
		154.4 Sm³/min		19.83 %		-	
		배출가스 유속		수분량		배출가스 온도	
		1.14 m/s		7.01 %		61.4 ℃	
	채 취 자 의 견	정상가동					
	채 취 일 시			시료채취자		—	(서명) (직명)

⑤측정분석결과	측 정 항 목	단위	방법검출한계	배출허용기준	측정 분석 값	측정 분석 방법	기기명
	크로뮴화합물	mg/Sm³	0.001	0.4	0.425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03404.2c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호, 2022.2.7]	ICP-OES
			-	이하여백	-		

측정분석 결과서

위반사례 2	
위반사항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 운영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호
벌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사용중지(배출시설 설치가능 지역) 및 폐쇄(배출시설 설치 불가능 지역)
위반내용	▶ 대기배출시설과 연결된 방지시설의 굴뚝 측정공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사이안화수소, 염화수소, 플루오린화합물)이 설치허가 기준 이상 검출되었음에도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함 ▶ 측정결과: 사이안화수소: 0.06ppm (허가기준: 0.05ppm) 염화수소: 0.4ppm (허가기준: 0.4ppm) 플루오린화합물: 0.05ppm (허가기준: 0.05ppm)
관련사진	

2	산처리시설(부식시설포함)	11.5㎡	2대			750㎥/분	1대
3	화성처리시설	11.5㎡	2대		흡수에 의한 시설	700㎥/분	1대
4	화성처리시설	11.5㎡	1대			530㎥/분	1대
4	화성처리시설	11.5㎡	1대				
5	화성처리시설	11.5㎡	1대		방지시설설치면제		
6	탈지시설	10.5㎡	1대	먼지,아민류,아연 및 그 화합물,질소산화물,황산화물		200㎥/분	1대
7	탈지시설	8.55㎡	1대		흡수에 의한 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증

측 정 항 목	단위	방법검출한계	배출허용기준	측정 분석 값	측정 분석 방법	기기명
사이안화수소	ppm	0.02	4	0.06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01312.1c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호, 2022.2.7.]	UV-vis
염화수소	ppm	0.1	4	0.4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01305.1d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호, 2022.2.7.]	IC
플루오린화합물	ppm	0.02	2	0.05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01311.1d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호, 2022.2.7.]	UV-vis

측정분석 결과서

위반사례 3	
위반사항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벌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사용중지(배출시설 설치가능 지역) 및 폐쇄(배출시설 설치 불가능 지역)
위반내용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년 ○월 대기배출시설인 텐터시설 2기(용적 106.4㎥)를 설치하고 조업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지 아니함
관련사진	 텐터시설 1호기 텐터시설 2호기 조업 중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모습

위반사례 4	
위반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① 배출시설의 증설 미신고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의2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나, 미신고함 ▶ 배출시설 증설사항: 용해시설 23㎥ x 4개 (허가증상 용량: 20㎥) 저장시설 3.6㎥ x 2개 (허가증상 용량: 0.5㎥)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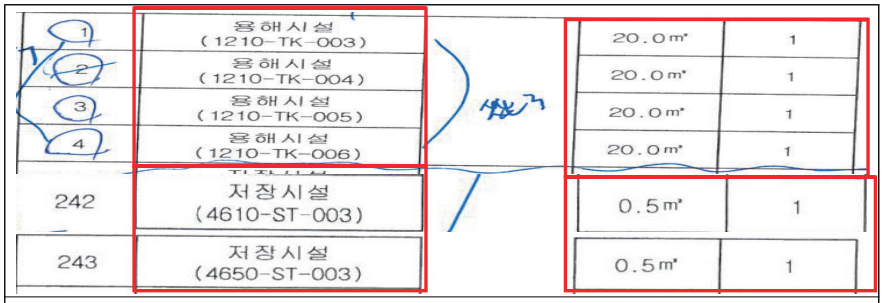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증설한 배출시설

1	용해시설 (1210-TK-003)	20.0㎥	1
2	용해시설 (1210-TK-004)	20.0㎥	1
3	용해시설 (1210-TK-005)	20.0㎥	1
4	용해시설 (1210-TK-006)	20.0㎥	1
242	저장시설 (4610-ST-003)	0.5㎥	1
243	저장시설 (4650-ST-003)	0.5㎥	1

위반사례 5	
위반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② 신규 대기오염물질 검출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의2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대기배출시설과 연결된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에서 배출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됨 ▶ 측정결과: 크로뮴화합물 0.005mg/S㎥, 암모니아 0.5ppm, 사이안화수소 0.02ppm, 폼알데하이드 0.068ppm * 모두 배출허용기준 미만 검출
관련사진	

플라스틱 제품제조	도장시설	15.7㎡	1대	먼지, 탄화수소	흡착에 의한 시설	750㎥/분 1대
플라스틱 제품제조	건조시설	34.5㎡	1대			
플라스틱 제품제조	건조시설	11.6㎡	1대			
플라스틱 제품제조	건조시설	10.2㎡	1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

⑤ 측정분석결과	측 정 항 목	단위	방법검출한계	배출허용기준	측정 분석 값
	먼지	mg/Sm³	0.1	30	0.7
	카드뮴화합물	mg/Sm³	0.001	0.2	불검출
	납화합물	mg/Sm³	0.008	0.8	불검출
	크로뮴화합물	mg/Sm³	0.001	0.4	0.005
	니켈화합물	mg/Sm³	0.003	2	불검출
	구리화합물	mg/Sm³	0.003	4	불검출
	아연화합물	mg/Sm³	0.030	4	불검출
	황산화물	ppm	5.0	200	불검출
	질소산화물	ppm	5.0	150	불검출
	일산화탄소	ppm	5.0	-	불검출
	암모니아	ppm	0.4	30	0.5
	황화수소	ppm	0.5	6	불검출
	브로민화합물	ppm	0.6	3	불검출
	사이안화수소	ppm	0.02	4	0.02
	염화수소	ppm	0.1	4	불검출
	페놀	ppm	0.07	4	불검출
	폼알데하이드	ppm	0.003	8	0.068
	다이클로로메테인	ppm	0.17	50	불검출

측정분석 결과

위반사례 6	
위반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③ 방지시설의 증설 미신고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의2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자가 방지시설을 증설 ·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 허가증상 방지시설 용량: 흡착에 의한 시설, 222㎥/분 x 3개 증설한 방지시설 용량 : 흡착에 의한 시설, 300㎥/분 x 3개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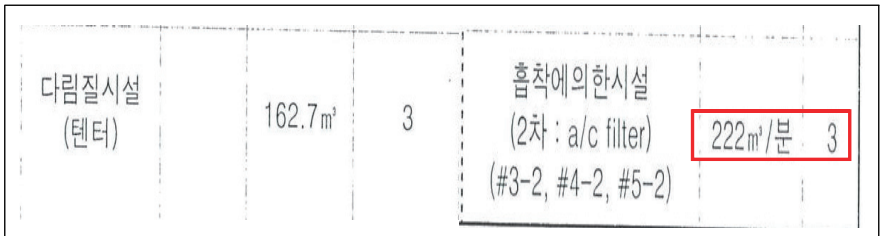 다림질시설 (텐터) | 162.7㎥ | 3 | 흡착에의한시설 (2차 : a/c filter) (#3-2, #4-2, #5-2) | 222㎥/분 |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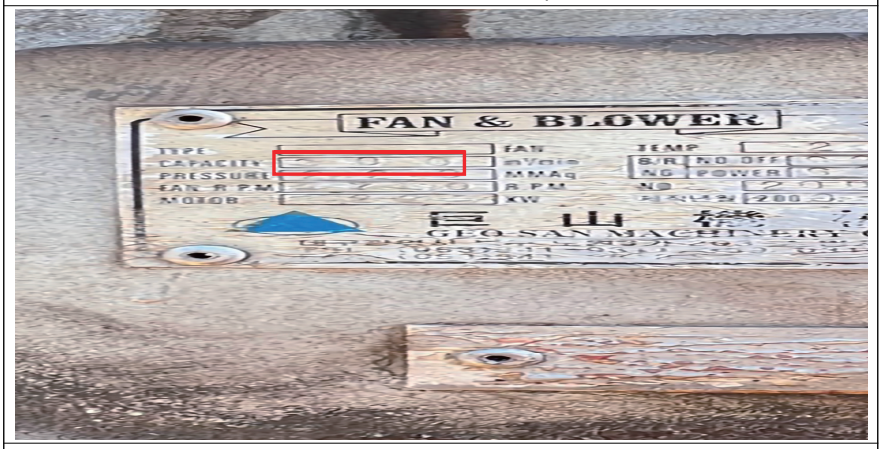 실제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시설(300㎥/분)

위반사례 7	
위반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④ 그 밖의 경우(일일조업시간 변경)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의2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을 변경(증가)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 신고한 일일조업시간: 8시간, 300일 변경한 일일조업시간: 23시간, 300일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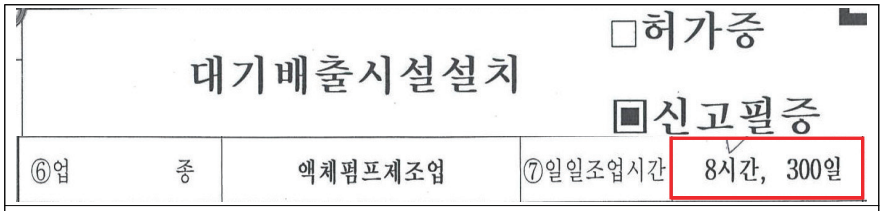 □허가증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⑥업 종 액체펌프제조업 ⑦일일조업시간 8시간, 300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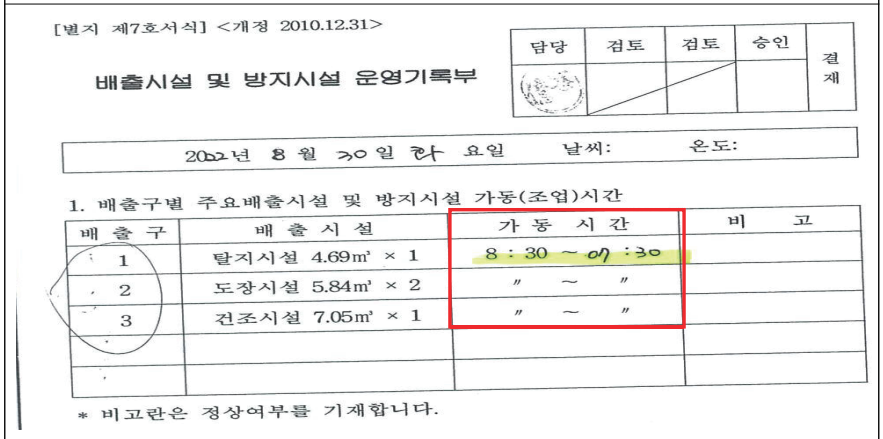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2.3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담당 검토 검토 승인 결재 2022년 8 월 30 일 화 요일 날씨: 온도: 1. 배출구별 주요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 배출구 배출시설 가동시간 비고 1 탈지시설 4.69m³ × 1 8 : 30 ~ 07 : 30 2 도장시설 5.84m³ × 2 〃 ~ 〃 3 건조시설 7.05m³ × 1 〃 ~ 〃 * 비고란은 정상여부를 기재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상 가동시간(23시간 가동)

위반사례 8	
위반사항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2호
벌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배출시설 조업정지(가동개시 신고전까지)
위반내용	▶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절단시설(10HP)과 습식분쇄시설(30HP)을 설치 · 가동함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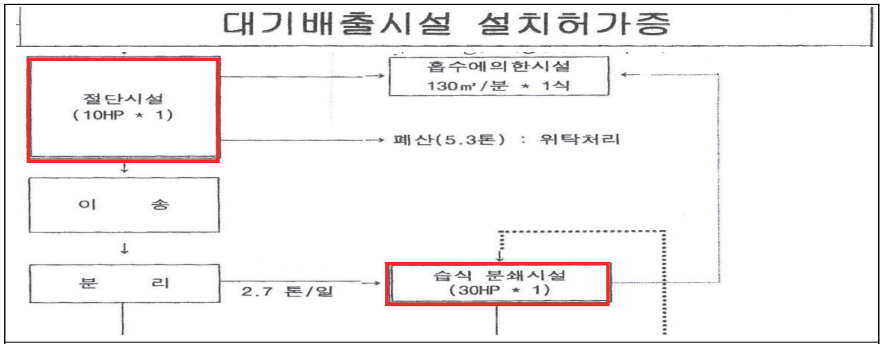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절단시설(10HP)

위반사례 9	
위반사항	대기오염물질 공기희석 배출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벌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조업정지 10일(1차)
위반내용	▶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 ▶ 도장 및 건조시설과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을 연결하는 관로에 공기흡입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함
관련사진	 방지시설 모습(흡착에 의한 시설) 공기흡입관 모습

위반사례 10	
위반사항	방지시설 미가동 ①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벌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조업정지 10일(1차)
위반내용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함 ▶ 침전탈지, 아연도금시설(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의 흡수액 순환(분무) 모터를 가동하지 않고 송풍기만 가동함
관련사진	 대기배출시설 조업 모습 세정수 순환펌프 미가동 모습

위반사례 11	
위반사항	방지시설 미가동 ②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벌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조업정지 10일(1차)
위반내용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함 ▶ 주형장입시설(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여과에 의한 시설)의 송풍기를 가동하지 아니함
관련사진	 대기배출시설 조업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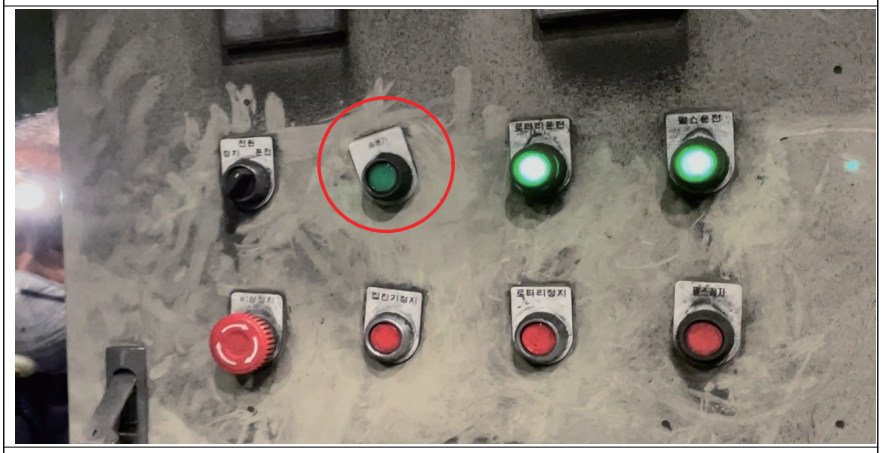 송풍기 미가동 모습

위반사례 12	
위반사항	대기 가지배출관 설치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2호
벌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조업정지 10일(1차)
위반내용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면 안됨 ▶ 열공급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원심력집진시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배출관을 통해 배출함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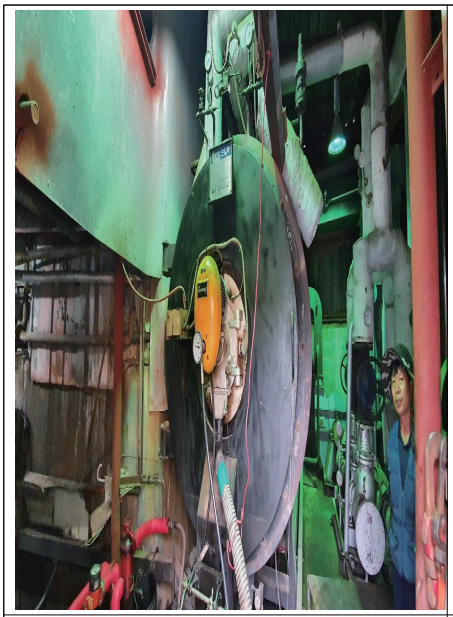 열공급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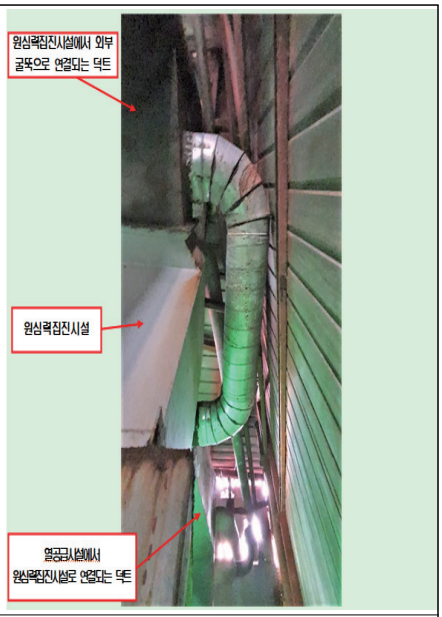 가지배출관

위반사례 13	
위반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식,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호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0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면 안됨 ▶ 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의 흡수액 순환과정에서 누수, 마모로 인하여 흡수액(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치함
관련사진	방지시설 모습 흡수액 유출 모습

위반사례 14	
위반사항	방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고장,훼손 방치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호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0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방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고장,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면 안됨 ▶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배출배관의 이음새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
관련사진	 방지시설 모습 덕트 연결부 훼손 모습

위반사례 15	
위반사항	운영기록부 미작성, 거짓작성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1호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보일러)의 운영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실제 운영시간(평균 6~15시간)과 다르게 운영일지(매일 24시간)를 작성함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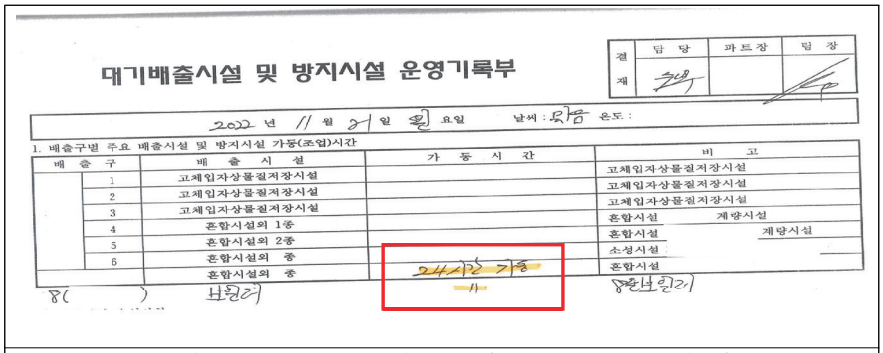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24시간 가동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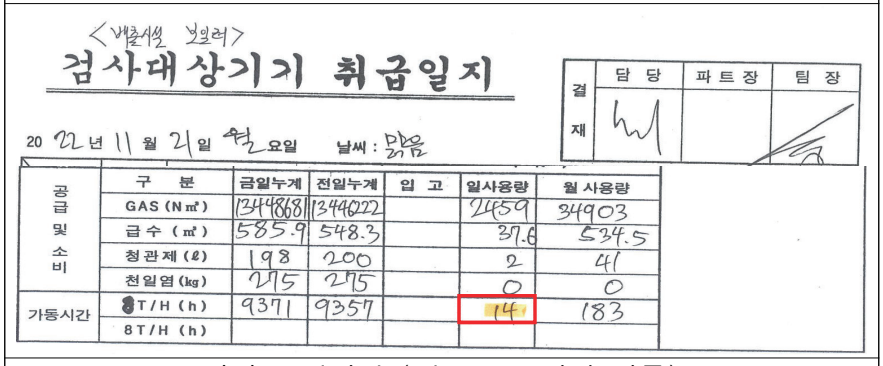 기기 운영일지 (평균 6~15시간 가동)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결재	담 당	과 트 장	팀 장

2022 년 11 월 21 일 월 요일 날씨 : 맑음 온도 :

1.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1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2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3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4	혼합시설의 1종		혼합시설 계량시설
	5	혼합시설의 2종		혼합시설 계량시설
	6	혼합시설의 종		소성시설
		혼합시설의 종	24시간 가동	혼합시설

8( ) 보일러 보일러

<벌크시설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취급일지

결재	담 당	파 트 장	팀 장

20 22 년 11 월 21 일 월 요일 날씨 : 맑음

	구 분	금일누계	전일누계	입 고	일사용량	월 사용량
공급 및 소비	GAS (N㎥)	1344868	1344022		2459	34903
	급 수 (㎥)	585.9	548.3		37.6	534.5
	청관제 (ℓ)	198	200		2	41
	천일염 (kg)	275	275		0	0
가동시간	T/H (h)	9371	9357		14	183
	8T/H (h)					

위반사례 16	
위반사항	자가측정 미이행 ①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의3호
벌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야 함 ▶ '○○년 1월 ~ '○○년 12월 동안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의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아니함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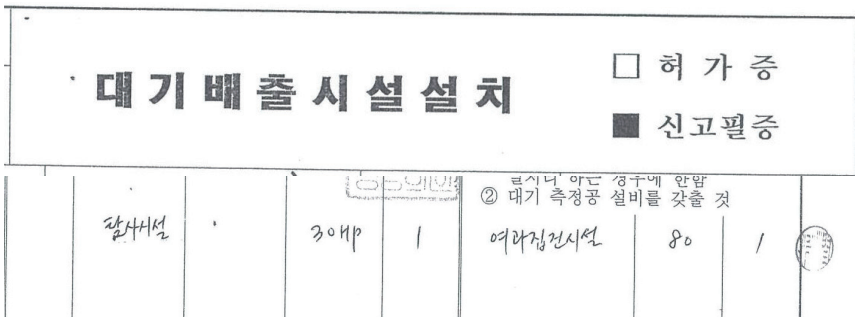 대기배출시설설치 □ 허가증 ■ 신고필증 ② 대기 측정공 설비를 갖출 것 잡사시설 30HP 1 여과집진시설 80 1

위반사례 17	
위반사항	자가측정 미이행 ②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의3호
벌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야 함 ▶ 해당연도 이전 최근 1년간 배출허용기준이 30%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염화수소)을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하나, 월 1회만 측정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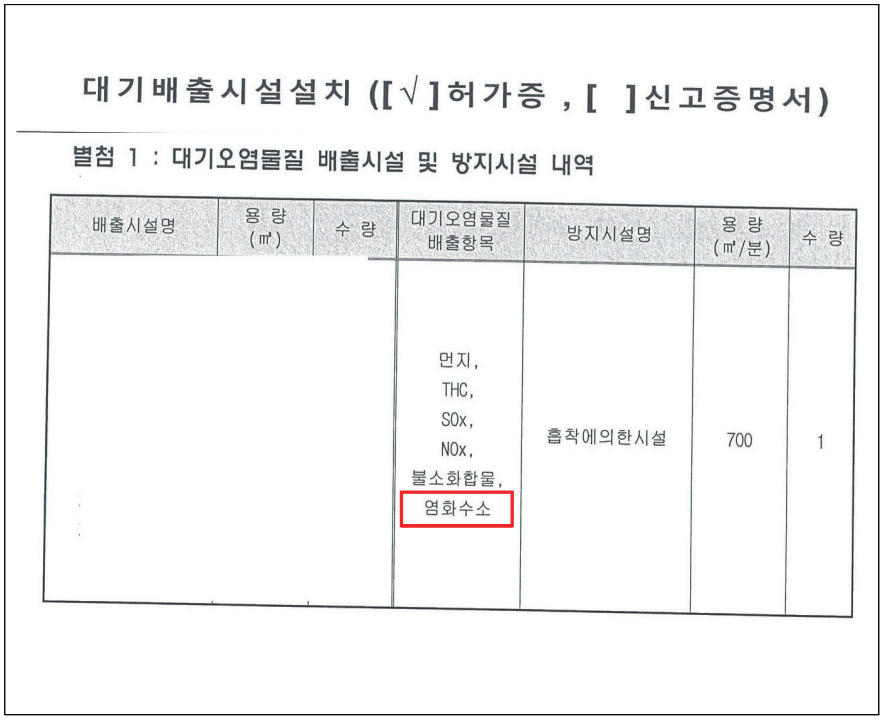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 [ ]신고증명서)

별첨 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내역

배출시설명	용량 (㎥)	수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	방지시설명	용량 (㎥/분)	수량
			먼지, THC, SOx, NOx,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흡착에의한시설	700	1

위반사례 18	
위반사항	환경기술인 미임명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2호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0만원)
행정처분	선임명령(1차)
위반내용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함 ▶ 2019년 9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조업을 하면서 점검당시까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조업함
관련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를 허가, [√]설치신고를 증명) 합니다.)년)월 일

위반사례 19	
위반사항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2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환경기술인은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와 시료채취기록지를 함께 날짜별로 보관 · 관리(6개월간)해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소각시설 외 16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13개의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 여과지를 보관 · 관리하지 아니함

위반사례 20	
위반사항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8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행정처분	-
위반내용	▶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환경기술인 ○○○은 2017년 ○월 ○일에 전문대기 환경기술인 교육을 수료한 이후 점검일(2023년)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함

위반사례 21	
위반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4의2호
벌칙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년 ○월부터 알루미늄 주물주조업(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운영하면서 점검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함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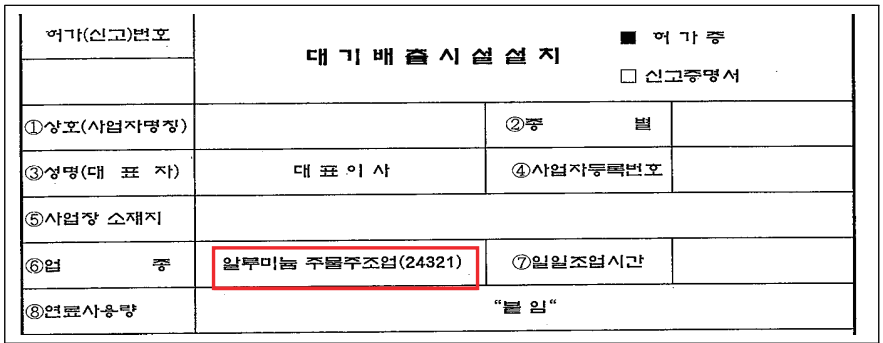 허가(신고)번호: 대기배출시설설치 ■ 허가증 □ 신고증명서 ①상호(사업자명칭): ②종별 ③성명(대표자): 대표이사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장 소재지 ⑥업종: 알루미늄 주물주조업(24321) ⑦일일조업시간 ⑧연료사용량: "불 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알루미늄 스크랩(분체상) 모습

위반사례 22	
위반사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벌칙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년 ○월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득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나 방진덮개로 야적물질을 덮지 않음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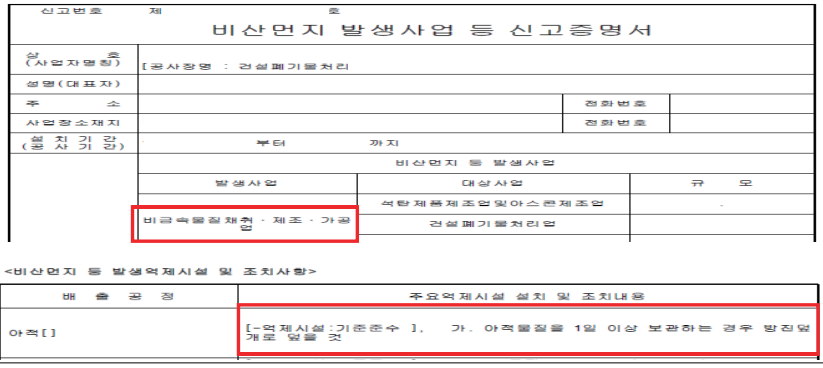 신고번호 제 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상호(사업자명칭) [공사장명 : 건설폐기물처리]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부터 까지 비산먼지 등 발생사업 발생사업 / 대상사업 / 규모 석탄제품제조업및아스콘제조업 비금속물질채취·제조·가공 / 건설폐기물처리업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야적[] / [-억제시설:기준준수], 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야적물질(골재) 방진덮개 미설치

위반사례 23	
위반사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행정처분	개선명령(1차)
위반내용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년 ○월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득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방진벽을 설치하였으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함
관련사진	 방진벽 훼손 모습①
	 방진벽 훼손 모습②

□ 물환경보전법 위반사례

순번	법령	위 반 내 용
1	제15조제1항	공공수역 지정폐기물 누·유출
2	제32조제1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3	제33조제1항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4	제33조제1항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5	제33조제2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①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
6	제33조제2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②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7	제35조제2항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8	제38조제1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9	제38조제3항	운영일지 미작성
10	제47조제1항	환경기술인 미선임
11	제53조제1항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미이행

위반사례 1	
위반사항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 유출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벌칙조항	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1호
벌칙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방제조치(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누출 ·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유압진공펌프에서 사용하고 발생된 폐유를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폐유 유출 흔적 폐유 보관 드럼 우수관로로 폐유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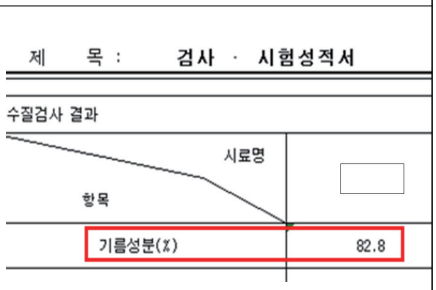 제 목 : 검사 · 시험성적서 수질검사 결과 시료명 항목 기름성분(%) 82.8 지정폐기물 여부 분석 결과

위반사례 2	
위반사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
행정처분	개선명령(물환경보전법 제39조)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수질오염물질(아연) 측정 ▶ 측정결과 : 아연 21.040mg/L (배출허용기준 5mg/L 이하) ※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제41조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관련사진	신고증명서 (배출항목): 용 수 :6.35 ㎥/일 → Q : 6.35 ㎥/일, PH : 4 ~ 6, TOC : 83 mg/ℓ, SS : 180 mg/ℓ, n - H : 3.0mg/ℓ, Fe : 20 mg/ℓ, Zn : 10 mg/ℓ, Cu : 0.2 mg/ℓ, TU : 1 측정결과: 제 목 : 검사 · 시험성적서

수질검사결과

항목 \ 시료명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8
부유물질(mg/L)	63.3
아연(mg/L)	21.040

위반사례 3	
위반사항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 운영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벌칙조항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벌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사용중지(배출시설 설치가능 지역) 및 폐쇄(배출시설 설치 금지 · 제한 지역)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설치허가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관할기관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한 사실을 확인함 * 폐수 분석결과: 구리 0.172mg/L(적용기준 0.1mg/L)
관련사진	신고증명서 / 측정결과

신고증명서

⑪ 폐 수 배 출 및 처 리 명 세

폐수배출시설명	폐수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폐
신고된 폐수배출시설	199㎥/일	pH, BOD, COD, SS, T-N, T-P, 생태독성	

⑫ 폐수처리계통도 : 따로 붙임

⑬ 신고의 수리조건

- 신고된 폐수배출시설 외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설치허가 적용기준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측정결과

제 목 : 검사 · 시험성적서

.수질검사 결과

항목 \ 시료명	
6가크롬(mg/L)	0.00
구리(mg/L)	0.172
납(mg/L)	0.00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mg/L)	0.0

위반사례 4	
위반사항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 운영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벌칙조항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2호
벌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사용중지(배출시설 설치가능 지역) 및 폐쇄(배출시설 설치 금지 · 제한 지역)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년 ○○월 ○○일에 폐수배출시설인 침사식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한 이후 점검일 현재까지 해당 시설을 관할기관에 설치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침사식 세륜세차시설) 사진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침사식 세륜세차시설) 사진②

위반사례 5	
위반사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①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과태료조항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3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 허가받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신고하지 않은 신규물질(용해성망간, 불소, 니켈, 바륨)이 측정결과* 검출됨 * 용해성망간 3.258mg/L, 불소 0.19mg/L, 니켈 0.123mg/L, 바륨 0.024mg/L ※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제41조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관련사진	신고증명서 (배출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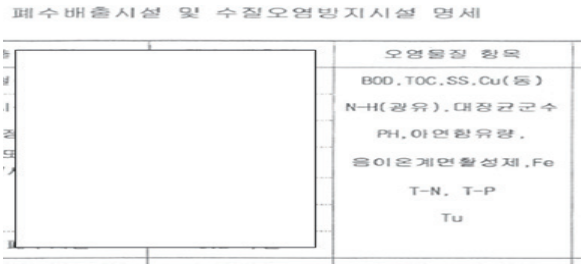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 오염물질 항목 BOD,TOC,SS,Cu(동) N-H(광유),대장균군수 PH,아연함유량, 음이온계면활성제,Fe T-N, T-P Tu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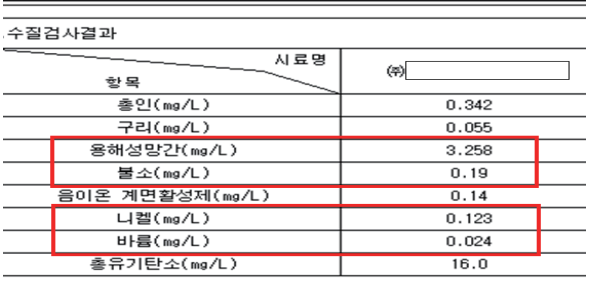 제 목 : 검사 · 시험성적서 수질검사결과 시료명 / 항목 | (주) 총인(mg/L) | 0.342 구리(mg/L) | 0.055 용해성망간(mg/L) | 3.258 불소(mg/L) | 0.19 음이온 계면활성제(mg/L) | 0.14 니켈(mg/L) | 0.123 바륨(mg/L) | 0.024 총유기탄소(mg/L) | 16.0

위반사례 6	
위반사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②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과태료조항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3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의 처리계통도와 다른 순서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 허가증 처리계통도: 여과조 - 처리수조 - 방류조 - 유량계 → 최종방류 * 실제 방지시설: 여과조 - 유량계 - 방류조 → 최종방류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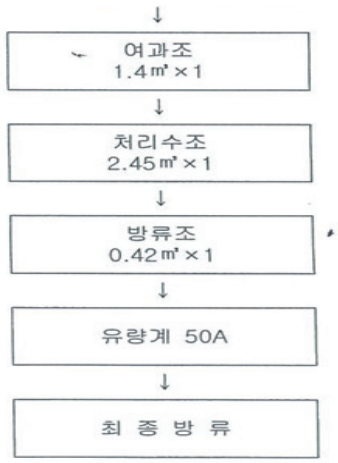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상 폐수처리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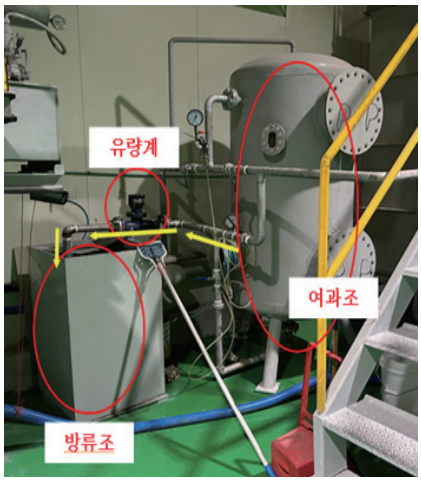 실제 폐수처리 과정 (여과조→유량계→방류조)

위반사례 7	
위반사항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과태료조항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0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33조제3호,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폐수저장조에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 정착폐수를 저장하는 저장조에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정착폐수'라고 표시하지 않음
관련사진	 정착폐수 저장조 표시 없음① 정착폐수 저장조 표시 없음② 폐수 저장조(계측기 없음)

위반사례 8	
위반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벌칙조항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3호
벌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조업정지 10일(1차)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폐수 방지시설 중 호기조에 수중모터 및 호스를 설치하여 간헐적으로 오수맨홀에 배출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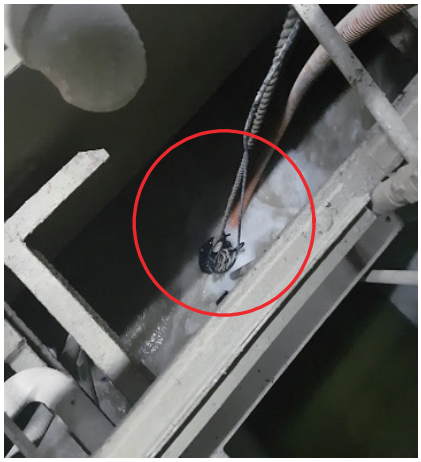 호기조에 설치된 수중펌프와 호스 오수 맨홀로 연결된 호스

위반사례 9	
위반사항	운영일지 미작성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과태료조항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2호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전하여야 함 ▶ ○○○○년 ○○월 ○○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참고사항	○ **운영일지의 기록 및 보존** **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③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 **시행규칙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기록일로부터 1년간 보존(무방류 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별지 제19호 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보존 가능

위반사례 10	
위반사항	환경기술인 미선임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과태료조항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4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00만원)
행정처분	환경기술인 선임명령(1차)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함 ▶ 배출시설 최초 신고일인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함
참고사항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시행령 제59조제2항[별표17])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 · 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위반사례 11	
위반사항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미이행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과태료조항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5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00만원)
행정처분	-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할기관에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 해당 사업장은 ○○업을 하며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였음에도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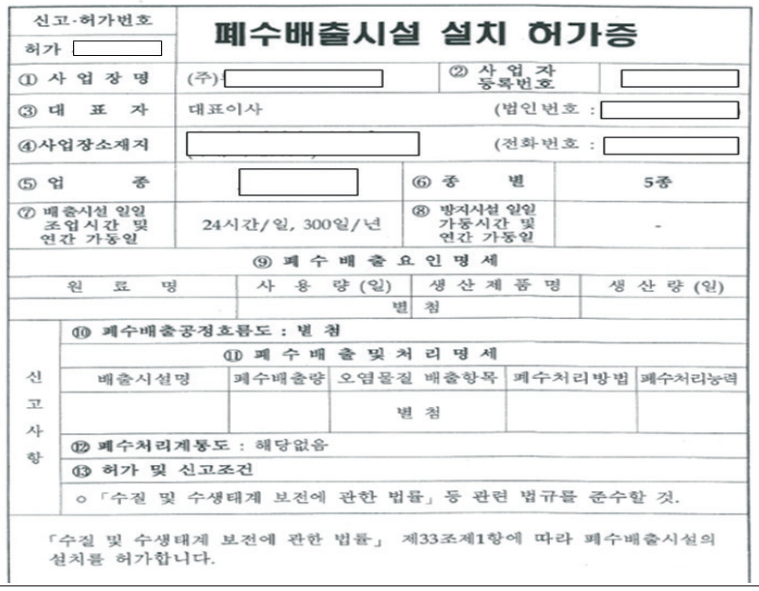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신고·허가번호
허가 [redacted]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① 사 업 장 명	(주)[redacted]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redacted]
③ 대 표 자	대표이사	(법인번호 : [redacted]	
④사업장소재지	[redacted]	(전화번호 : [redacted]	
⑤ 업 종	[redacted]	⑥ 종 별	5종
⑦ 배출시설 일일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24시간/일, 300일/년	⑧ 방지시설 일일 가동시간 및 연간 가동일	-

⑨ 폐 수 배 출 요 인 명 세

원 료 명	사 용 량 (일)	생 산 제 품 명	생 산 량 (일)
	별	첨	

신고사항

⑩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별 첨

⑪ 폐 수 배 출 및 처 리 명 세

배출시설명	폐수배출량	오염물질 배출항목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별 첨		

⑫ 폐수처리계통도 : 해당없음

⑬ 허가 및 신고조건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

순번	법령	위 반 내 용
1	제8조제2항	폐기물 무단 매립
2	제8조제2항	폐기물 불법소각
3	제13조제1항	폐기물 부적정 보관 – ① 주변환경오염
4	제13조제1항	폐기물 부적정 보관 – ② 혼합보관
5	제13조제1항	폐기물 부적정 보관 – ③ 폐기물 야외보관 및 흩날림
6	제13조제1항	폐기물 부적정 보관 – ④ 폐기물 야외보관
7	제13조제1항	폐기물 부적정 보관 – ⑤ 지정폐기물 야외보관 및 표지판 미부착
8	제13조제1항	폐기물 부적정 보관 – ⑥ 의료폐기물 냉장보관 미이행
9	제17조제2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10	제18조제3항	폐기물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 기간내 입력하지않거나 부실하게 입력
11	제31조제1항	폐기물 처분시설 관리기준 위반(침출수 수위 초과)
12	제36조제3항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
13	제38조제1항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미입력
14	제25조제11항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15	제25조제9항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위반사례1	
위반사항	폐기물 무단 매립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호
벌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되나, ▶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도중 발생한 폐수를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매립하기 위해 파낸 흙 폐수를 불법 매립

위반사례2	
위반사항	폐기물 불법소각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호
벌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되나, ▶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기름이묻은장갑,공정오니)을 공장 뒤편의 야외에서 불법 소각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불법 소각시설 불법 소각시설 내 소각흔적

위반사례3	
위반사항	폐기물 부적정 보관 - ① 주변환경오염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벌칙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1차, 배출자 아님) 및 조치명령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보관)하려는 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 보관의 과정에서 폐유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관련사진	 기름을 보관한 드럼 기름을 보관한 드럼 기름이 보관과정에 유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오염

위반사례4	
위반사항	폐기물 부적정 보관 - ② 혼합보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벌칙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경고(배출자 아님) 및 조치명령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보관)하려는 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혼합 보관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폐기물보관장 폐기물보관장 폐기물 혼합보관 지정, 일반폐기물 혼합보관

위반사례5	
위반사항	폐기물 부적정 보관 - ③ 폐기물 야외보관 및 흩날림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벌칙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경고(배출자 아님) 및 조치명령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보관)하려는 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 폐기물을 보관시설 외부로 흩날리게 보관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폐기물보관장 폐기물보관장 밖에 보관 폐기물보관장 가림막 고장 폐기물(분진)부적정 보관

위반사례6	
위반사항	폐기물 부적정 보관 - ④ 폐기물 야외보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벌칙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경고(배출자 아님) 및 조치명령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보관)하려는 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 적정한 보관시설 외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폐기물보관장 폐기물보관장 밖에 보관

위반사례7	
위반사항	폐기물 부적정 보관 - ⑤ 지정폐기물 야외보관 및 표지판 미부착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벌칙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경고(배출자 아님) 및 조치명령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보관)하려는 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 지정폐기물을 야외에 보관하거나, 지정폐기물 보관장에 폐기물의 보관에 대한 사항(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지정폐기물 야외 보관 지정폐기물 보관장(표지판 없음) 폐기물 보관 표지판 없이 보관① 폐기물 보관 표지판 없이 보관②

위반사례8	
위반사항	폐기물 부적정 보관 - ⑥ 의료폐기물 냉장보관 미이행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벌칙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제7조,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보관)하려는 자는 적정하게 보관(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나, ▶ 조직물류 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춘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상온 보관 중인 조직물류폐기물 보관창고 온도(섭씨 24.5도)

위반사례9	
위반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과태료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의4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 신고증명서상 자가처리이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함.
관련사진	 생활계 | 초본류 | 51-17-24 | 고상 | 5 | 60 | 자가 | 60 | 자가 | 자가 | 60 | レ 처리계획 증명서 내 초본류 처리방법 (자가) 폐기물(초본류)처리 용역계약서 초본류를 처리하기위한 업체 계약서

위반사례10	
위반사항	폐기물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 기간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과태료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의3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5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 인수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나, ▶ 폐기물의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을 확인함.

위반사례11	
위반사항	폐기물 처분시설 관리기준 위반(침출수 수위 초과)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과태료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4호(주변환경오염 없는 경우) ※ (주변환경오염 있는 경우) 법 제66조제13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500만원, 주변환경오염 없는 경우) ※ (주변환경오염 있는 경우)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1차), 개선명령
위반내용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있는 침출수 수위를 매립 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 매립이 끝난 시설의 경우 2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 침출수 수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위반사례12	
위반사항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7의2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5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법 제25제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 · 배출 · 처리상황 등(장부기록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나, ▶ 장부기록사항에 관한 사실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을 확인함.

위반사례13	
위반사항	폐기물의 발생 · 처리에 관한 보고서 미제출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지정폐기물) / 제68조제3항제8호(일반폐기물)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지정폐기물)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50만원, 일반폐기물)
위반내용	▶ 매년 폐기물의 발생 ·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 승인 · 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위반사례14	
위반사항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미이행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4호
벌칙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중요사항(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폐기물 보관장 허가받지않은 선별시설 허가받지않은 선별시설 선별된 금속 폐기물

위반사례15	
위반사항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9호
벌칙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아야 하나, ▶ 위탁받은 폐기물 중 일부만 기간 내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폐기물 보관장 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례

순번	법령	위 반 내 용
1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 ① 밀폐보관 위반
2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 ② 비상세안시설 미작동
3	제14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보호장구 미착용
4	제28조	유해화학물질 허가 미이행 (무허가 영업)
5	제28조제5항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미이행 – ① 취급 품목 추가
6	제28조제5항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미이행 – ② 사용량 증가
7	제28조제5항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 ① 기술인력 미선임
8	제28조제5항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 ② 대표자 미변경
9	제24조제3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
10	제49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실적 미보고
11	제33조제2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수 – ① 관리자·취급자 교육 미이수
12	제33조제3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수 – ② 종사자 교육 미이수
13	제15조제3항	운반계획서 미제출
14	제32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퇴직 및 선임신고 미이행
15	제31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미이행
16	제9조제1항 제20조제2항	확인명세서 미제출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17	제16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기준 위반
18	제50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

위반사례 1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 ① 밀폐보관 위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벌칙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1호
벌칙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경고(1차) (화학물질관리법 제34의2제1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위반내용	▶ 황산IBC탱크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상부의 용기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보관
관련사진	 현장 사진

위반사례 2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 ② 비상세안시설 미작동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벌칙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1호
벌칙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경고(1차) (화학물질관리법 제34의2제1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위반내용	▶ 화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르면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할 것"으로 되어있으나, 점검시 비상세안시설 미작동 상태로 방치
관련사진	 비상세안시설 미작동

위반사례 3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보호장구 미착용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1항
벌칙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2호
벌칙	고발(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경고(1차) (화학물질관리법 3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4호)
위반내용	▶ 화학사고 발생시 작업자가 개인보호 미착용 상태로 작업 ▶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관련사진	개인보호장구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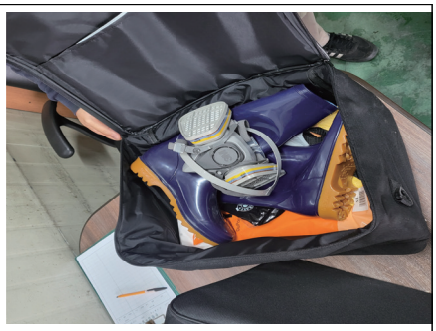 개인보호장구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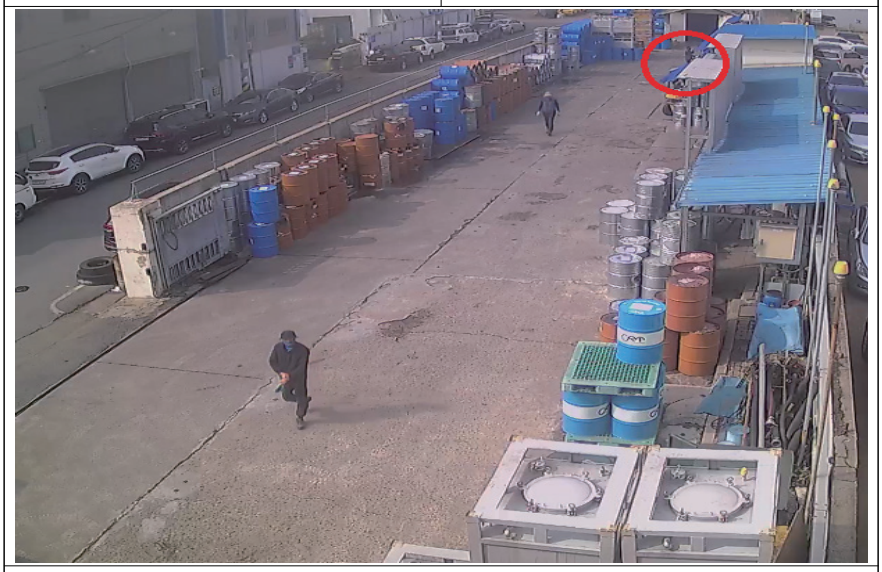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CCTV

위반사례 4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허가 미이행 (무허가 영업)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벌칙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4호
벌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내용	▶ 유해화학물질(톨루엔)을 연간 100kg 이상* 구매 및 사용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함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2호 참고
관련사진	회사명 : [illegible] / 2000/01/01 ~ 2023/03/31 / 판매현황

일자	판매처명	품명 및 규격	수량	단가
2018/07/05 -14	[illegible]	톨루엔 [Kg]	170.0	1,150
2018/07/05 -44	[illegible]	톨루엔 [Kg]	170.0	1,090
2018/10/12 -20	[illegible]	톨루엔 [Kg]	340.0	1,180
2019/04/08 -34	[illegible]	톨루엔 [Kg]	170.0	1,057
2019/05/09 -30	[illegible]	톨루엔 [Kg]	170.0	1,100
2019/06/24 -24	[illegible]	톨루엔 [Kg]	170.0	1,070
2019/08/21 -39	[illegible]	톨루엔 [Kg]	170.0	1,070
2019/09/10 -49	[illegible]	톨루엔 [Kg]	170.0	1,100
2019/10/04 -45	[illegible]	톨루엔 [Kg]	170.0	1,130
2020/07/20 -27	[illegible]	톨루엔 [Kg]	170.0	930
2020/09/25 -54	[illegible]	톨루엔 [Kg]	170.0	930
2021/04/01 -30	[illegible]	톨루엔 [Kg]	340.0	1,210
2021/04/01 -66	[illegible]	톨루엔 [Kg]	170.0	1,210
2022/04/07 -40	[illegible]	톨루엔 [Kg]	340.0	1,770
2023/03/24 -37	[illegible]	톨루엔 [Kg]	340.0	1,560
합계			3,230.0	17,557

2023/04/05 오후 1:23:06

유해화학물질 톨루엔 판매내역

톨루엔 사용흔적 (사업장)

위반사례 5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미이행 - ①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벌칙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제4호
벌칙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개선명령(1차)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제15호)
위반내용	▶ 개미산(포름산)[CAS No.64-18-6, 함유량 85%] 240L를 사업장 보관 ▶ 영업허가증 상 개미산(포름산)(사고대비물질) 없음
관련사진	<취급품목 현황> 일자 / 내용: 유해화학물질 구분, 물질명(고유번호, CAS번호), 연간취급 예정량(톤) / 비고 1991.05.22 / 유독물질 / 수산화나트륨 (97-1-136, 1310-73-2) / 700 / 1995.07.12 / 유독물질 / 과산화수소 (97-1-2, 7722-84-1) / 5 / 32% 개미산(포름산) 허가내역 없음 개미산 약 240리터 보관

위반사례 6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미이행 - ②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증가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벌칙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제4호
벌칙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개선명령(1차)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제15호)
위반내용	▶ 2022년 수산화 나트륨 587.6톤 및 과산화수소 33.8톤을 사용하여 총 사용량 621.4톤으로 허가증 상 연간사용량(402톤)의 100분의 50 이상 초과하여 사용함
참고사항	

<취급품목 현황>

일자	내용			비고
	유해화학물질 구분	물질명 (고유번호, CAS번호)	연간취급 예정량(톤)	
1999.12.01	유독물질	수산화 나트륨 (97-1-136, 1310-73-2)	390	
1999.12.01	유독물질	과산화 수소 (97-1-2, 7722-84-1)	12	32%

당시 허가증상 사용량 (402톤/년)

조제 수불 현황

결재	실장	전무	사장

2022년 01 월 01 일

품 명	전일 재고	입 고 량	입고 누계	사 용 량	재 고 량	사용 금액
과수(H202)	780.000	33,600.000	33,600.000	33,800.000	580.000	29,176,000
합 계	780.000	33,600.000		33,800.000	580.000	29,176,000

* 특기사항

일계 : 29,176,000
누계 : 29,176,000

조제 수불 현황

결재	실장	전무	사장

2022년 01 월 01 일

품 명	전일 재고	입 고 량	입고 누계	사 용 량	재 고 량	사용 금액
NAOH가성소다	12,210.000	587,610.000	587,610.000	587,600.000	12,220.000	199,153,050
합 계	12,210.000	587,610.000		587,600.000	12,220.000	199,153,050

* 특기사항

일계 : 199,153,050
누계 : 199,153,050

2022년 실사용량(총 621.4톤)

위반사례 7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 ① 기술인력 미선임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마목
과태료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1항제5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0만원)
위반내용	▶ 기술인력을 선임(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기술인력이 미선임된 상태로 운영(변경신고 미이행)

참고사항

수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 선임이행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중 제조업, 보관·저장업, 종업원 10인 이상 사용업, 판매업 영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3. 현재 귀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선임이 유예되어 있으므로, 올해 연말까지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을 확보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영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변경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관: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나.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다.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우)39161
   라. 문의: 054-459-1177, 1172
5.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미선임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600만원, 1차)가 부과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 1부. 끝.

사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따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어 새로 표시됨

기술인력 선임을 위한 변경신고 안내공문('18년)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2012.11.06	유독물 사용업 등록	대구 달성군 권영일
2017.07.00	기존 유독물 사용업 등록증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으로 갱신 - 허가번호 : 제2086-12002호 → 제605-170090호	대구지방환경청 김영희

기술인력 선임(변경)신고 내역 없음 ('23.4월)

위반사례 8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 ② 대표자 미변경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가목
과태료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1항제5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0만원)
위반내용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하나, 변경신고 미이행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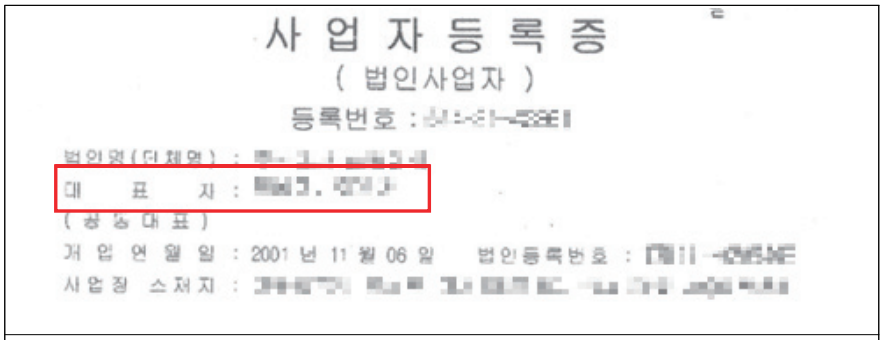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2명) 허가증 대표자 (1명)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명(단체명) :

대 표 자 :

(공동대표)

개 업 연 월 일 : 2001 년 11 월 06 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 허가증 □ 변경허가증
신청인 신규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취급시설 보유 여부	□ 없음 ■ 자가 □ 위탁 □ 임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상 동			
취급품목명	황산, 수산화나트륨		전체연간취급량	210톤
종 업 원 수	46명		사업장 면적	11,016㎡
보관·저장 시설능력	저장 11㎥		운반장비능력	-
전년도 매출액 (사업장)	-			

위반사례 9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행정처분	개선명령(1차)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2항제10호)
위반내용	▶ 2017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이후 2023년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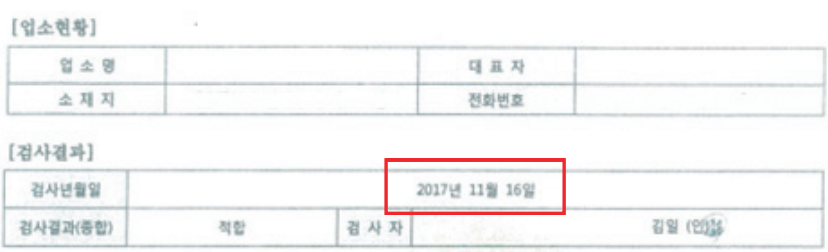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업소현황] 업 소 명 / 대 표 자 소 재 지 / 전화번호 [검사결과] 검사년월일 / 2017년 11월 16일 검사결과(종합) / 적합 / 검 사 자 / 김일 (인) 2017년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위반사례 10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실적 미보고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과태료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1항제11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0만원)
행정처분	개선명령(1차)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35조제2항제24호)
위반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화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지68호]~[별지74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참고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9. 12. 20.> [ ] 제조 [ ] (시약)판매 유해화학물질 [ ] 보관 · 저장 세부실적보고(년도분) [ ] 운반 [ ] 사용 보고인 상호(명칭) 보고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번호 제 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보관 · 저장시설 현황 시설 수 총용량 사업장 경유 하천 ( ) 택배 운반시 물류업체명 택배 운반시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 [ ] 확 인 [ ] 미확인 내 · 외부 포장기준 [ ] 준 수 [ ] 미준수 택배 운송 금지 물질 [ ] 포 함 [ ] 미포함 유독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상품명) 물질명 함유량(%) 취급량(톤/년) 주요 용도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상온 · 상압에서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서식)

위반사례 11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수 - ① 관리자 · 취급자 교육 미이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
과태료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2항제4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80만원)
위반내용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2년마다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이 16명이지만, 취급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내역이 없었음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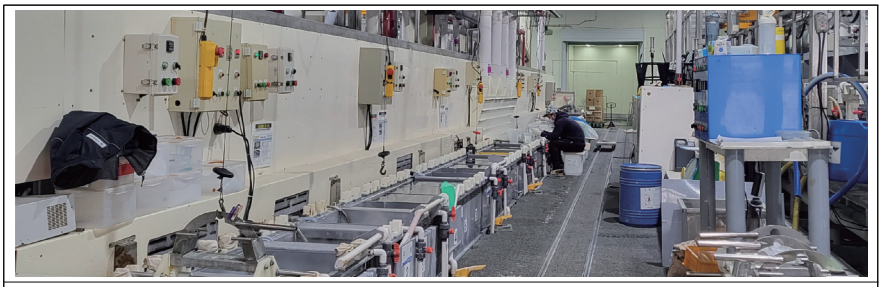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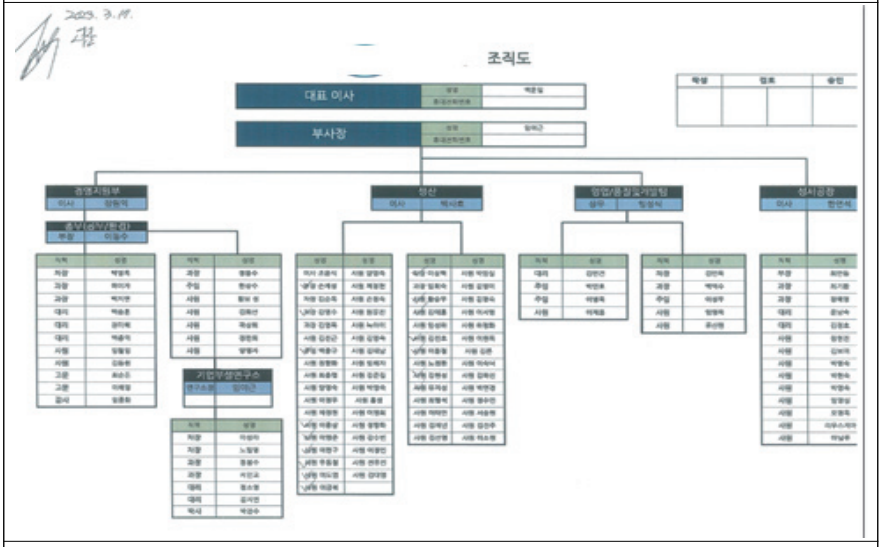 사업장 조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v표시)

위반사례 12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수 - ② 종사자 교육 미이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3항
과태료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2항제4호
벌칙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80만원)
위반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결과 41명이 재직 중이나, 유해화학물질분야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함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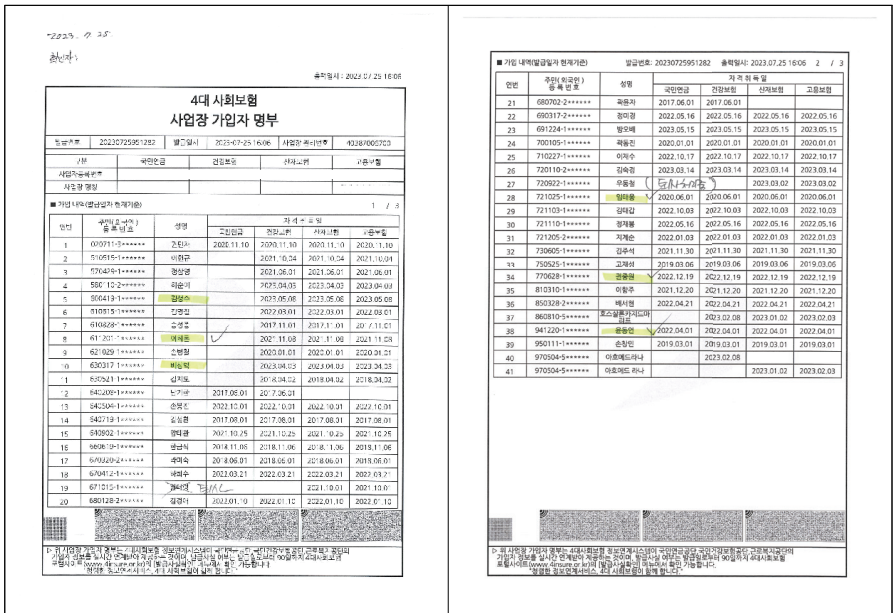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총41명)

위반사례 13	
위반사항	운반계획서 미제출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행정처분	경고(1차)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2항제6호)
위반내용	▶ 사고대비물질(톨루엔)을 3,000kg 이상 운반할 경우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9호서식]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2023년 2월 24일 유해화학물질(톨루엔) 운반관리대장에 4,080kg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해당 날짜 운반계획서 미제출
참고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제품(상품)명:Toluene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성분: 100% 단위:kg 연월일 / 운반량 / 출발지점 / 도착지점 / 차량번호 / 위탁인(상호(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비고 2023.02.16 1,020 대구시 서구 팔달로2길 24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203-2 820보8553 850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전리 558 86고5389 2023.02.17 340 대구시 서구 팔달로2길 24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25-25 86고5389 340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64길 34 86고5389 2023.02.20 170 대구시 서구 팔달로2길 24 대구시 달성군 시지로 92-3(옥포읍) 820보8553 340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3-12 89누7036 680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587-10 성서2차공단5블 13L 86고5389 340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25-25 86고5389 2023.02.21 1,020 대구시 서구 팔달로2길 24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43 89누7036 1,360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3길 21 89누7036 680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802 86고5389 2023.02.22 1,020 대구시 서구 팔달로2길 24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203-2 820보8553 3,740 대구시 달서구 장동 333-6 92고3186 7,030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1길 16-7 92고3186 2023.02.23 1,020 대구시 서구 팔달로2길 24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43 89누7036 340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64길 34 820보8553 170 경북 경산시 자인면 한장군로 488 86고5389 1,700 경북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378-7 86고5389 2023.02.24 4,080 대구시 서구 팔달로2길 24 대구시 달서구 장동 333-6 92고3186 3,400 대구시 달서구 장동 333-6 89누7036 340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25-25 86고5389 1,020 경북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477-5 89누7036 2023.02.27 510 대구시 서구 팔달로2길 24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203-2 820보8553 2023.02.28 1,700 대구시 서구 팔달로2길 24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3길 21 89누7036 유해화학물질(톨루엔) 운반관리대장

위반사례 14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퇴직 및 선임신고 미이행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과태료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1항제7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0만원)
행정처분	개선명령(1차)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제1항제9호 및 제35조제2항제19호)
위반내용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3명) 중 1명이 퇴직하였으나, 퇴사자의 퇴직신고를 미이행 ▶ 해당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3명 임명하여야 하나, 결원발생에도 불구하고 신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신고 미이행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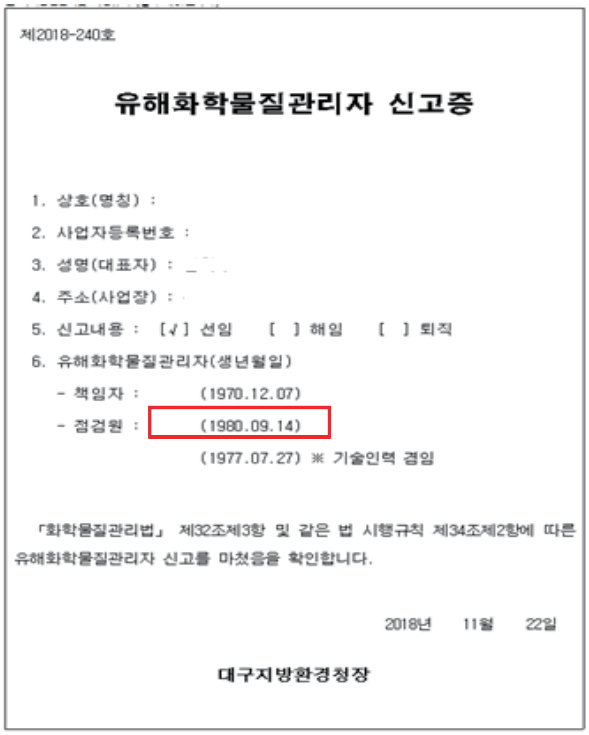 제2018-240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신고내용 : [√] 선임 [ ] 해임 [ ] 퇴직 6. 유해화학물질관리자(생년월일) - 책임자 : (1970.12.07) - 점검원 : (1980.09.14) (1977.07.27) ※ 기술인력 겸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퇴사 후 퇴직(선임)신고 미이행

위반사례 15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미이행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과태료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1항제6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2항제16호)
위반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주물생산 및 금속후처리 가공의 전반적인 작업(메틸알코올 취급)에 대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도급신고를 미이행
참고사항	 도급계약서

도 급 계 약 서

□ 도급인 (갑) :
□ 수급인 (을) :

도급인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_____ 주요 내용 _____ 일 일 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기본정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나아가 부단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합리화로써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킴을 그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제3조의 업무처리를 주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받아 성실하게 완성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범위) 주물제조의 주가 되는 주물생산 및 금속후처리 가공의 전반적인 작업사항에 한한다.

제4조 (도급금액) ① 도급금액은 (제품출고량 × 생산제품별 단가)로 산정하되, 생산제품별 세부단가는 (갑)과 (을)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② 도급금액은 매월말 마감후 익월 (20)일 지급한다.

제5조 (물량품의 조치) 물량처리는 제품출고량에서 반품된 물량을 공제하고, 대체조치 및 대금공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토록 한다.

제6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양 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내용 및 계약기간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기계설비·공구 및 소비자재) ① (갑)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계 및 설비공치(이하 '대여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을)에게 무상 대여토록 한다. 다만, 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소비자재는 대여물건에 부속하는 특장의 부품 및 공구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반사례 16	
위반사항	확인명세서 미제출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벌칙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1호
벌칙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입신고 미이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600만원, 확인명세서 미제출)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유독물질(질산 87kg, 불산43.6kg)을 수입하였으나 수입일 이전에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유독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수입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참고사항	HI! 청렴, Bravo! 관세청 관세청 **양 산 세 관** 수신 대구지방환경청장 (경유) 제목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 요건미구비 반입내역 통보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환경부간 '수입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업사업' 관련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인 '질산(CAS No 7697-37-2)' 및 '불화수소(CAS No 7664-39-3)'를 환경청 사전신고 없이 반입한 내역을 붙임과 같이 확인하여 통보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산 및 불화수소' 미신고 반입내역 1부. 끝. 유독물질 수입 미신고 반입내역 공문(세관)

위반사례 17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부착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벌칙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4호
벌칙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개선명령(1차)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제5호 및 제35조제2항제7호)
위반내용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물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국제연합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표시를 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타 업체로 납품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메틸알코올 용기(8개)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함
관련사진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부착

위반사례 18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제1항
과태료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2항제5호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80만원)
행정처분	개선명령(1차)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제1항제12호 및 제35조제2항제25호)
위반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함 ▶ 황산(70%)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75호 서식]의 판매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함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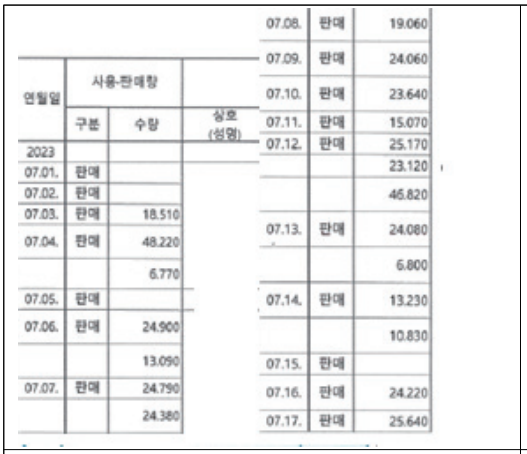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실제 거래내역서

연월일	사용·판매량 구분	사용·판매량 수량	상호 (성명)
2023			
07.01.	판매		
07.02.	판매		
07.03.	판매	18.510	
07.04.	판매	48.220	
		6.770	
07.05.	판매		
07.06.	판매	24.900	
		13.090	
07.07.	판매	24.790	
		24.380	
07.08.	판매	19.060	
07.09.	판매	24.060	
07.10.	판매	23.640	
07.11.	판매	15.070	
07.12.	판매	25.170	
		23.120	
		46.820	
07.13.	판매	24.080	
		6.800	
07.14.	판매	13.230	
		10.830	
07.15.	판매		
07.16.	판매	24.220	
07.17.	판매	25.640	

전 자 거

[공급

일 자 : 2023-07-31

거 래 처 :

주 소 :

전 화 번 호 : 0549568000 팩스번호 : 0537218006

합계금액 : 7,905,117

월일	품목명/규격	수량
0701	70%황산	24,110
0703	70%황산	24,060
0704	70%황산	24,170
0706	70%황산	24,210
0707	70%황산	24,080
0708	70%황산	24,210
0712	70%황산	23,120
0712	역반	20,310
0717	70%황산	24,010

02

기술지원 사례

기술지원1	
확인할 사항	▶ 차압계의 정상적인 작동 수시확인 필요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법령 미준수시 위반사항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 기구류 고장 · 훼손 방치
기술지원 사항	▶ 여과에 의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 기구류인 차압계를 통해 여과포의 파손 및 막힘 현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 보통 여과포를 털어주는 장치는 일정 압력이 걸렸을 때 작동하므로, 차압계의 관리가 중요함 - 이는 분진에 의해 여과포의 막힘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역할로, 차압계를 통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적정 차압범위는 시설별로 상이하므로, 방지시설 설계사항 등을 확인하여 차압여부 확인
참고자료	

기술지원2	
확인할 사항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연결관로 혹은 송풍기 하단부에 기온차에 의해 응결시 생기는 액상물질을 빼내기 위해 배관 및 밸브 설치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법령 미준수시 위반사항	▶ 공기희석
기술지원 사항	▶ 대기오염방지시설 내부의 온도와 야외의 온도 차이에 의해 관로 혹은 송풍기에 응결된 액체가 생길 수 있으며, 필요시 제거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보통 배관 및 밸브 등을 일정위치에 설치하나, ▶ 이를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희석하는 행위로 판단할 요소가 상당함 ▶ 따라서 평소에는 막아두거나 밸브를 잠그어 내부와 외부가 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배출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때에 배관 및 밸브개방을 하여야 함.
참고자료	

기술지원3	
확인할 사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허가증)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허가서)에 기재되어있는 오염물질의 일치여부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법령 미준수시 위반사항	▶ (대기,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신고사업장이 허가 기준치 이상 배출 시 무허가 ▶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변경허가 미이행(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사항	▶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허가서)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허가서)에 해당 오염물질이 기재됨 ▶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설치신고증명서(허가증)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원료 및 공정 확인 또는 오염물질 분석 등을 통해 두 신고증명서(허가서)의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기술지원4	
확인할 사항	▶ 흡착에 의한 시설 내부 활성탄 교체시기 준수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법령 미준수시 위반사항	▶ 배출허용기준 초과
기술지원 사항	▶ 방지시설 중 흡착에 의한 시설은 내부의 활성탄에 대기오염물질이 흡착을 하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로, ▶ 활성탄의 공극이 파과(공극막힘)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제거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으므로, 활성탄의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함 ▶ 활성탄을 일부 채취하여 활성탄 흡착시험*을 하거나, 자가측정 결과 등을 참고하여 활성탄의 교체를 적절히 할 필요가 있음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허가증) 등에 교체주기가 기재된 경우 해당 주기 준수필요 * 아이오딘(요오드) 흡착능력 시험 등, KSM1802 활성탄 시험방법 참고

기술지원5	
확인할 사항	▶ 환경기술인 선임 여부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법령 미준수시 위반사항	▶ 환경기술인 미선임
기술지원 사항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함 ▶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에 임명서를 작성하여 구비 ※ 별도의 법정양식 없음, 업무분장, 내부임명공문 등 환경기술인 임명사실이 확인 가능하면 됨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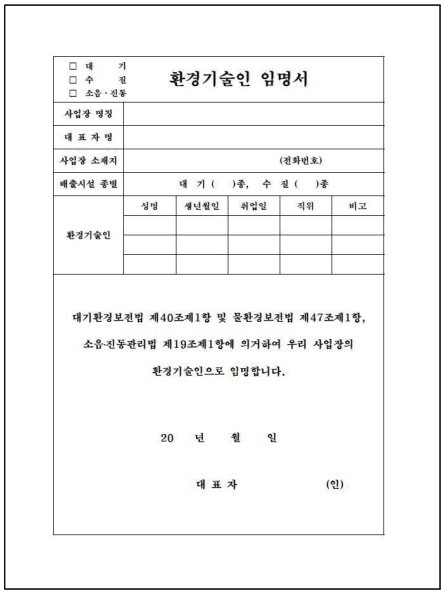

□ 대 기
□ 수 질
□ 소음 · 진동

환경기술인 임명서

사업장 명칭					
대 표 자 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시설 종별	대 기 ( )종, 수 질 ( )종				
환경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취업일	직위	비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3

환경법령 개정 사항

('23.1.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법령 개정사항 목차

순번	법령	시행일 및 법령호수, 개정일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5.03.**(단, 별표8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 2023.01.01.), **환경부령 제1003호, 2022.5.3., 일부개정**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16.**(단, 별표 10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2024.1.1.), **환경부령 제1050호, 2023.08.16., 일부개정**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01.01.**(단, 제84조의2 개정규정 2023.04.04.), **대통통령 제33373호, 2023.04.04., 일부개정**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04.**(단, 별표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 2024.1.1.), **환경부령 제1027호, 2023.04.04., 일부개정**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11.29.**(단, 별표9 제3호가목7)가) · 나) · 마) 및 별표11 제1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시행, 별표9 제3호가목7)다) 및 라)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시행, 그 외 부칙 참조), **환경부령 제1006호, 2022.11.29., 일부개정**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5.31.**(단,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 2023.06.11.), **환경부령 제1037호, 2023.05.31., 일부개정**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11.**(단, 별표8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 2024.02.12.), **환경부령 제1048호, 2023.08.11., 일부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05.03.**(단, 별표8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 2023.01.01.)**, 환경부령 제1003호, 2022.5.3.,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의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아날린, 아세트알데히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문1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제센터"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개정문2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까지로 하고,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3)제1항 중 "영 별표 3의2"를 "영 별표 3의3"으로 한다.
개정문3	**별표 8 제2호가목1)의 사염화탄소(ppm)란 다음에 아닐린(ppm)란, 프로필렌옥사이드(ppm)란, 아세트알데히드(ppm)란, 이황화메틸(ppm)란, 히드라진(ppm)란, 에틸렌옥사이드(ppm)란 및 벤지딘(ppm)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닐린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시설	25 이하
프로필렌옥사이드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90 이하
아세트알데히드 (ppm)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	10 이하
이황화메틸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3 이하
히드라진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15 이하
에틸렌옥사이드 (ppm)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3 이하
벤지딘 (ppm)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중 벤지딘을 사용하는 시설	2 이하

<table>
<tr><td>개정문4</td><td>**별표 8 제2호나목1)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으로서)(㎎/S㎥)란 다음에 베릴륨화합물(Be로서)(㎎/S㎥)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영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이 표에서 "관제센터"라 한다)"로 한다.
<table>
<tr><td rowspan="3">베릴륨화합물
(Be로서)
(㎎/S㎥)</td><td>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td><td>0.05 이하</td></tr>
<tr><td>2) 석탄발전시설</td><td>0.04 이하</td></tr>
<tr><td>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를 포함한다),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td><td>0.04 이하</td></tr>
</table></td></tr>
<tr><td>개정문5</td><td>별표 9 제2호나목 본문 및 다목 중 "관제센터"를 각각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측정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한다.
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교체 계획을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td></tr>
<tr><td>개정문6</td><td>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목 중 "관제센터"를 각각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td></tr>
<tr><td>개정문7</td><td>별표 36 제2호나목6)나)의 위반사항란 중 "영 제19조에 따른 관제센터"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13)가) 중 "제37조의4제1호"를 "제37조의5제1호"로 하며, 같은 13) 나) 중 "제37조의4제5호"를 "제37조의5제5호"로 한다.</td></tr>
<tr><td>개정문8</td><td>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제1호의 가동시간란 및 제2호가목의 방지시설명란·설치위치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td></tr>
<tr><td>개정문9</td><td>별지 제12호의3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제4항)"으로 한다.</td></tr>
<tr><td>개정문10</td><td>별지 제12호의4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항"으로 한다.</td></tr>
</table>

<table>
<tr><td>개정문11</td><td>별지 제12호의5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3호"로 한다.</td></tr>
<tr><td>개정문12</td><td>별지 제12호의6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제1항"로 한다.</td></tr>
<tr><td>개정문13</td><td>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table>
<tr><th rowspan="2">방지시설명</th><th colspan="2">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th></tr>
<tr><th>배출시설</th><th>방지시설</th></tr>
<tr><td>1. 원심력집진시설(별표 4 제3호)</td><td>전류계</td><td>전류계</td></tr>
<tr><td>2. 세정집진시설(별표 4 제4호)</td><td>전류계</td><td>전류계</td></tr>
<tr><td>3. 여과집진시설(별표 4 제5호)</td><td>전류계</td><td>전류계, 차압계, 온도계</td></tr>
<tr><td>4. 전기집진시설(별표 4 제6호)</td><td>전류계</td><td>전류계</td></tr>
<tr><td>5. 흡수에 의한 시설(별표 4 제8호)</td><td>전류계</td><td>전류계, pH계</td></tr>
<tr><td>6. 흡착에 의한 시설(별표 4 제9호)</td><td>전류계</td><td>전류계, 차압계, 온도계</td></tr>
</table>
비고
제3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제6호에 따른 흡착에 의한 시설 중 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온도계와 제5호에 따른 흡수에 의한 시설 중 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pH계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td></tr>
</table>

<table>
<tr><td>부칙</td><td>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 1)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td></tr>
</table>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3.08.16.(단, 별표10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1.1), 환경부령 제1050호, 2023.08.16.,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문1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개정문2	별표 10의2 제3호가목2)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정배출시설에 연결된 플레어스택[무보조방식(non assisted flare)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관리대상물질을 98% 이상 저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스팀 보조방식(steam assisted flare) 및 혼합공기 보조방식(premix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2,579 kcal/S㎥(290BTU/Sft3)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perimeter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64kcal/S㎡(24BTU/Sft2)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1)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流量),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 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측정해야 한다. (3) (1) 및 (2)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을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라) 공정배출시설에 연결되지 않거나 무보조방식의 플레어스택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광학가스탐지카메라(optical gas imaging camera)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2) 모니터링은 매일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문3	별표 10의2 제3호나목3)가)(2)(가) 중 "2,403kcal/S㎥(270BTU/Sft3)"를 "2,579kcal/S㎥(290BTU/Sft3)"로, "196kcal/S㎥(22BTU/Sft3)"를 "64kcal/S㎡(24BTU/Sft2)"로 한다.
개정문4	별표 10의2 제3호나목3)가)(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보조방식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나) 모니터링은 매일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문5	별표 14 제6호 배출공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및 자연녹지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만 해당한다]
개정문6	별표 21의2 제2호 비고의 표 중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의 계산식란 중 "시·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을 "시·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또는 말소등록신청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4.01.01.(단, 제84조의2 개정규정 2023.04.04.), 대통령 제33373호, 2023.04.04.,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최적 공법 개발에 활용하는 등 수질원격감시체계*에서 처리하는 측정자료의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매년 1회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의 '일일 배출량'을 매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수질 악화에 사업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 Monitoring System):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으로부터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원격감시시스템

개정문1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리 등에 관하여"를 "관리·공개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연간 배출량"을 "일일 배출량"으로, "매년 6월 30일"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개정문2	제41조제5항제1호 중 "3시간"을 각각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3시간"을 각각 "24시간"으로 한다.
개정문3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시간"을 각각 "24시간"으로 한다.
개정문4	제84조의2 중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확정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기준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측정자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도의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3.04.04.(단, 별표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 2024.1.1.), 환경부령 제1027호, 2023.04.04., 일부개정]

개정이유	폐수배출시설에서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었으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사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24시간 측정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최종방류구에 부착하는 기기

개정문1	제38조제1항제3호 중 "경우는"을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 각 목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나.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문2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문3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 전 2. 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제2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개정문4	제89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1. 제3항제1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제3항제2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전
개정문5	별표 19 제7호2) 중 "위탁처리해야"를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직접 처리하여 배출해야"로 한다.
개정문6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 전단 중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을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11.29.(단, 별표9 제3호가목7)가) · 나) · 마) 및 별표11 제1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4.12.31. 시행, 별표9 제3호가목7)다) 및 라)의 개정규정은 2025.12.31. 시행, 그 외 부칙 참조), 환경부령 제1006호, 2022.11.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완성을 위하여 열분해 방식으로 열분해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재활용시설인 열분해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011호, 2022. 11.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열분해를 통한 재활용 가능유형 및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열분해시설의 설치·검사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자원순환보증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1회용 컵을 추가하는 등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인 1회용 컵의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고 유해성이 적은 왕겨 및 쌀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및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의 입력 의무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 고도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광학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

개정문1	제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6조제6항제10호에 따른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는 자
개정문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폐기물을 생활환경"을 "생활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다목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 단서"로 한다.
개정문3	제15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개정문4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고[제18조제4항제2호·제5호(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문5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을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으로 한다.

개정문6	제18조의2제1항제9호 중 "영 별표 1 제11호"를 "영 별표 1 제12호"로 한다.
개정문7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문8	제38조제2호 중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을 "고온소각시설·열분해 소각시설·고온용융시설"로 한다.
개정문9	제41조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문10	제41조제2항제4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각열회수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을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로 한다. 7. 열분해시설
개정문11	제66조제6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1회용 컵
개정문12	별표 4 제2호의 51-17-24란 다음에 51-17-25란 및 51-17-2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17-25 커피찌꺼기 51-17-26 버섯폐배지
개정문13	별표 4 제2호의 51-19-00란 중 "쌀겨"를 "쌀겨(「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91-17-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찌꺼기 91-17-02 버섯폐배지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개정문14	별표 4 제3호의 91-20-00란 다음에 91-2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21 1회용 컵 91-21-01 종이 컵 91-21-02 합성수지 컵 91-21-03 금속 컵
개정문15	별표 4의2 제1호나목1)·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및 2) 중 "수리·수선, 세척"을 각각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증발·농축 등의"를 "증발·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로,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의"를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로 하고, 같은 목 4) 중 "증발·농축 등의"를 "증발·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table>
<tr><td></td><td>등의"로,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를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외의"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3) 중 "액체, 기체"를 "수소 등의 기체, 액체"로 한다</td></tr>
<tr><td>개정문16</td><td>별표 4의3 제2호 51-03-01, 51-03-02, 51-03-06, 51-03-07, 51-03-99, 51-15-01 및 51-15-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각각 "R-3-3, R-3-4"로 하고, 같은 호의 51-17-24란 다음에 51-17-25란 및 51-17-2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tr><td rowspan="2">51-17-25</td><td rowspan="2">커피찌꺼기</td><td>R-4-5, R-4-8, R-5-1, R-5-2, R-5-3, R-9-3, R-9-4, R-10</td><td>해당 없음</td></tr>
<tr><td>R-2-2, R-4-2, R-5-4, R-6-1, R-8-2, R-9-1, R-9-5, R-10</td><td>해당</td></tr>
<tr><td rowspan="2">51-17-26</td><td rowspan="2">버섯폐배지</td><td>R-4-8, R-5-1, R-5-2, R-9-3, R-9-4, R-10</td><td>해당 없음</td></tr>
<tr><td>R-5-4, R-6-1, R-8-2, R-9-1, R-9-5, R-10</td><td>해당</td></tr>
</table></td></tr>
<tr><td>개정문17</td><td>별표 4의3 제3호 91-06-01 및 91-06-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3, R-3-4"로 하고, 같은 호 91-17-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td>91-17</td><td colspan="3">식물성 잔재물</td></tr>
<tr><td rowspan="2">91-17-01</td><td rowspan="2">커피찌꺼기</td><td>R-4-5, R-4-8, R-5-1, R-5-2, R-5-3, R-9-3, R-9-4, R-10</td><td>해당 없음</td></tr>
<tr><td>R-2-2, R-4-2, R-5-4, R-6-1, R-8-2, R-9-1, R-9-5, R-10</td><td>해당</td></tr>
<tr><td rowspan="2">91-17-02</td><td rowspan="2">버섯폐배지</td><td>R-4-8, R-5-1, R-5-2, R-9-3, R-9-4, R-10</td><td>해당 없음</td></tr>
<tr><td>R-5-4, R-6-1, R-8-2, R-9-1, R-9-5, R-10</td><td>해당</td></tr>
<tr><td rowspan="2">91-17-03</td><td rowspan="2">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td><td>R-4-8, R-5-1, R-5-2, R-5-4, R-9-4, R-10</td><td>해당 없음</td></tr>
<tr><td>R-4-5, R-8-2, R-9-1, R-10</td><td>해당</td></tr>
</table></td></tr>
<tr><td>개정문18</td><td>별표 4의3 제3호 91-18-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3, R-3-4"로 하고, 같은 호의 91-19-00란 다음에 91-2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91-21</td><td colspan="3">1회용 컵</td></tr>
<tr><td>91-21-01</td><td>종이 컵</td><td>R-3-3, R-4-3, R-10</td><td>해당 없음</td></tr>
<tr><td>91-21-02</td><td>합성수지 컵</td><td>R-3-3, R-4-4, R-10</td><td>해당 없음</td></tr>
<tr><td>91-21-03</td><td>금속 컵</td><td>R-3-3, R-4-1, R-10</td><td>해당 없음</td></tr>
</table>
</td></tr>
<tr><td>개정문19</td><td>별표 5 제1호나목2)가)부터 라)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폐전기전자제품류,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최대적재량 2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td></tr>
<tr><td>개정문20</td><td>별표 5 제6호가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 중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붙여야 한다.</td></tr>
<tr><td>개정문21</td><td>별표 5 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용기·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td></tr>
</table>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그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같은 항에 따라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수입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외한다) 4)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제10조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개정문22	별표 5 제6호사목(종전의 바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6)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제66조제3항·제6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개정문23	별표 5 제6호아목(종전의 사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제66조제3항·제6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개정문24	별표 5의3 제2호가목2)나)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커피찌꺼기를 축사 깔개 또는 분뇨처리장 등의 수분조절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수분함량 2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재활용해야 한다.
개정문25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R-3-3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를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재활용 대상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 외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리·제거해야 한다. (나) 폐유·폐유기용제·폐페인트·폐락카·폐농약·폐유독물·폐석면·폐폴리염화비닐(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제거해야 한다. (다) 폐지 또는 고철을 종이·판지, 포장용 완충재, 금속 또는 금속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에 따라 폐유 등을 담았던 용기 등을 제거한 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또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이물질(폐지 또는 고철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함량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의 결과를 폐지 또는 고철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①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 ② 폐지를 종이판지 또는 포장용 완충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 폐지를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비율로 3퍼센트 이하 ㉯ 폐지를 ㉮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비율로 5퍼센트 이하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열분해하여 생산한 열분해유는 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0.15퍼센트 이하 (나)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 (다) 회분(灰分: 유기질을 연소시켜 재로 만든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 무게비율로 0.05퍼센트 이하 (라) 황분(黃分: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유황,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 무게비율로 0.2퍼센트 이하 (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바)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사) 크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3) 폐합성수지류를 식품 용기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오염 방지를 위해 보관·선별·투입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문26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2) 나)(4) 중 "식물성 잔재물(커피찌꺼기로 한정한다)을"을 "커피찌꺼기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나)(1) 중 "연료화 시설에서 가스·유류 등을 뽑아 내거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유류를"을 "열분해 등의 방법으로 가스·유류 등을"로 하고, 같은 2) 다)(2)의 본문 중 "유기성 오니의"를 "유기성 오니, 커피찌꺼기 및 버섯폐배지의"로 하며, 같은 다) (6)의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유기성 오니는"을 "유기성 오니, 커피찌꺼기 및 버섯폐배지는"으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14) 커피찌꺼기를 점토로 재활용하여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제2호나목2)가)(6)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커피찌꺼기의 사용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개정문27	별표 5의7 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의7제3호"를 각각 "제16조의8제3호"로 한다.
개정문28	별표 6 제4호나목 중 "계량시설 인근에"를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로 한다.
개정문29	별표 8 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출입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문30	별표 8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현장이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소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제3호 바목의 위탁기준을 준수한 폐기물만을 위탁받아야 한다.
개정문31	별표 9 제1호나목2)다)(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열분해 소각시설
개정문32	별표 9 제3호가목3) 중 "시멘트·아스팔트"를 "시멘트·아스팔트·우레탄·에폭시"로, "포장하여야"를 "포장해야"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나)부터 라)까지의 기준은 선별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보관시설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오염물질의 유출 방지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해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해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선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반의 침하·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광학(光學)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갖춰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문33	별표 9 제3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열분해시설 가)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 응축설비, 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 또는 배기가스 처리설비, 유류저장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응축성 열분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 및 배기가스 처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열분해실·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에 예열 및 온도 조절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에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라) 열분해시설은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춰야 하며, 시설 내에 소화기 등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 열분해실·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에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해야 한다. 바) 열분해실·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해야 한다. 사) 열분해실은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반응 온도·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 폐기물 투입구·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자) 열분해시설은 열분해 후 발생한 고형잔재물이 발화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차)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투입한 폐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열분해유를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카) 시설규모,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열분해 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를 표시한 표지를 쉽게 지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문34	별표 10 제1호의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정기검사의 검사

<table>
<tr><td></td><td>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의"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한다.</td></tr>
<tr><td>개정문35</td><td>별표 10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열분해시설
<table><tr><th>구분</th><th>검사항목</th></tr><tr><td>설치검사</td><td>○ 열분해(가스화를 포함한다) 능력의 적절성 및 열분해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굴뚝 높이 및 구조의 적절성 여부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
○ 압력측정계 및 출구온도 측정공 설치·작동 여부
○ 열분해실의 공기유입·유출 방지 및 반응 온도·압력의 적정성 유지 여부
○ 배출가스 연속측정·기록 장치 작동상태
○ 폐기물 투입구·청소구의 내열성 및 공기유입·유출 방지 여부
○ 고형잔재물이 발화하지 않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
○ 표지판 부착 및 기재 사항·방법 준수 여부
○ 열분해유의 회수 기준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td></tr><tr><td>정기검사</td><td>○ 열분해(가스화를 포함한다) 능력의 적절성 및 열분해상태의 적절성 유지 여부
○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상태의 적절성 여부
○ 열분해실의 공기유입·유출 방지 및 반응 온도·압력의 적정성 유지 여부
○ 열분해유의 회수 기준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td></tr></table></td></tr>
<tr><td>개정문36</td><td>별표 11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실내작업장의 바닥, 벽 및 설비 등을 주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청소해야 하며, 청소 실적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td></tr>
<tr><td>개정문37</td><td>별표 11 제2호가목1)나)(3)(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열분해 소각시설</td></tr>
<tr><td>개정문38</td><td>별표 11 제2호다목2)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열분해시설
(1) 열분해실은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반응 온도·압력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2)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열분해유의 회수량이 투입한 폐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3)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저장탱크에 저장되는 열분해유의 양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한다.</td></tr>
</table>

개정문39	별표 16 제15호 중 "별표 4의2 제1호가목2)"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 또는 같은 호 나목2)(식물성 잔재물 중 커피찌꺼기만 해당한다)"로 한다.
개정문40	별표 21 제2호다목16)마)(3)을 (4)로 하고, 같은 마)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 바목의 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의 소각을 위탁받은 경우 | 경 고 |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월 |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3개월 | 영업정지 1개월
개정문41	별지 제22호서식 중 설치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치자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8호
개정문42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합니다)
개정문43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으로 한다.
개정문44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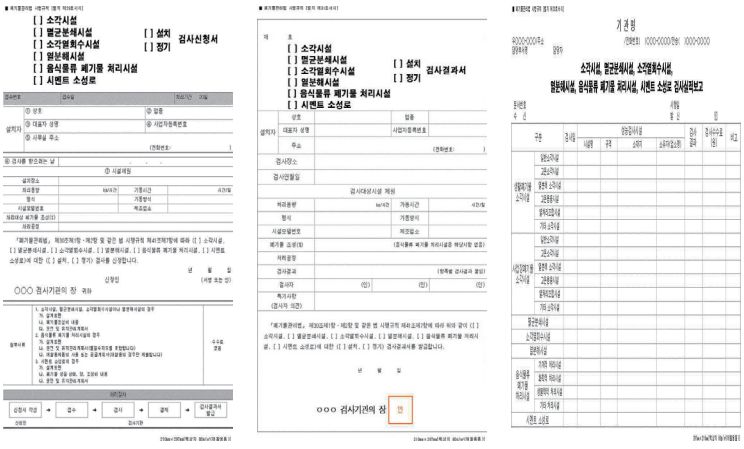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9 제3호가목7)가)·나)·마) 및 별표 11 제1호거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2. 별표 9 제3호가목7)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 제2조(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량이 해당 호에 따른 날 이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공포한 날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2024년 10월 1일** 제3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가목7)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05.31.(단,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 2023.06.11.), 환경부령 제1037호, 2023.05.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에는 폐목재의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14종의 분류 체계를 앞으로는 총 7종으로 간소화하고, 폐윤활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면서 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교육시기와 교육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각시설 등의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으로 에너지 관리기사를 추가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그 중 무거운 기준에 따르되 행정처분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하고,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1	제33조제1항제7호 중 "장소"를 "해당 시설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문2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3	제5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정문4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개정문5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6	제5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제1항 단서"를 "제5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개정문7	제51조제2항 단서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제50조제2항 제3호"를 "제50조제3항제3호"로 한다.
개정문8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연도"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문9	별표 4 제2호 51-17-06란 중 "피혁가공잔재물"을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로 한다.
개정문10	별표 4 제2호 51-20-01란부터 51-20-13란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51-20란 다음에 51-20-21란부터 51-20-26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51-22-02란 중 "콘크리트폐받침목"을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으로 한다. 51-20-21 임목폐목재(건설공사·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 뿌리·가지·줄기 등을 말한다) 51-20-2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 껍질·톱밥·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23 폐가구류·폐도장목·폐목재포장재·폐전선드럼·건설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24 접착제·페인트·기름·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51-20-25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26 폐철도목재받침목
개정문11	별표 4의3 제1호 06-01-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6"을 "R-3-3, R-4-6"으로 한다.
개정문12	별표 4의3 제2호 51-08-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4-2, R-7-1, R-7-3"으로 하고, 같은 호 51-17-06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피혁가공잔재물"을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로,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2-1, R-2-2"로 한다.

개정문13	별표 4의3 제2호 51-20-01란부터 51-20-13란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51-20란 다음에 51-20-21란부터 51-20-26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51-22-02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콘크리트폐받침목"을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으로 하고, 51-38-01 및 51-38-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3"을 각각 "R-5-3, R-9-3"으로 한다.

51-20-21	임목폐목재(건설공사·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가지·줄기 등을 말한다)	R-1-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9-5, R-10	해당
51-20-2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 껍질·톱밥·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1-1, R-1-2,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6-1, R-8-1, R-8-2, R-9-1, R-9-3, R-9-5, R-10	해당
51-20-23	폐가구류·폐도장목·폐목재포장재·폐전선드럼·건설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4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5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 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6	폐철도목재받침목	R-1-2, R-2-2, R-3-4, R-4-2,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개정문13	별표 4의3 제3호 91-02-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6-1"를 "R-6-1, R-9-3"으로 하고, 같은 호 91-08-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1-1, R-2-1"로 한다.
개정문14	별표 5의3 제2호가목1)나)(4)(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철도용 폐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받침목"을 "폐철도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것"으로 하고, 같은 (4) (가) 중 "목재 폐받침목"을 "폐철도목재받침목"으로 하며, 같은 (4) (나) 중 "콘크리트 폐받침목"을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으로 하고, 같은 목 2)나)(4)(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철도용 폐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받침목"을 "폐철도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것"으로 하며, 같은 (4) (가) 중 "목재 폐받침목"을 "폐철도목재받침목"으로 하고, 같은 (4) (나) 중 "콘크리트 폐받침목"을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으로 한다.
개정문15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1)(다)① 및 ②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 또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한다)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로 하고, 같은 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윤활유 또는 정제연료유(폐유를 별표 4의2 제5호나목2)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를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폐윤활유는 제2호마목2)가)(2)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정제한 후 용제추출 또는 수첨반응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나) 정제연료유는 용제추출 또는 수첨반응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다) (나)에 따라 처리되는 정제연료유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개정문16	별표 5의3 제2호나목2)나)(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철도용 폐받침목"을 "폐철도목재받침목"으로 하고, 같은 2) 마)(4)(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를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로, "발효 등의 분해과정"을 "분리, 혼합, 발효 등의 과정"으로 하며, 같은 (4) (가), (다)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유물질(SS) 5,000㎎/L 이하 (다) 총질소(T-N) 1,000㎎/L 이하 (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20,000㎎/L 이상
개정문17	별표 5의3 제2호라목1)가)(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무기성오니"를 "무기성오니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2) (가) 중 "건설폐재류(이하 "혼합물"이라 한다)"를 "건설폐재류"로, "50퍼센트"를 "50퍼센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경우 75퍼센트)"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한다.

개정문18	별표 5의3 제2호라목1)가)(6)을 (7)로 하고, 같은 가)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는 제2호나목2)가)(5)(나)의 기준(염소화합물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문19	별표 5의3 제2호라목1)다)(1)(가) 단서 중 "가)(6)"을 "가)(7)"로 하며, 같은 호 마목2)나)(3)①부터 ④까지 외의 부분 중 "철도용 폐받침목(목재인 것만 해당한다)"을 "폐철도목재받침목"으로 하며, 같은 나)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은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을 거쳐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문20	별표 5의3 제2호마목2)다)(4)(가) 중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로 한다.
개정문21	별표 5의4 제1호나목6) 중 "이내"를 "이내(별표 4의2 제4호가목, 나목 및 바목의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 부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문22	별표 5의6 제1호나목1)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와"를 "자에게"로,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폭발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을 "의뢰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유해특성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
개정문23	별표 7 제2호다목1)나) 중 "1톤"을 "2톤"으로 한다.
개정문24	별표 8 제4호아목 전단 중 "정제연료유를"을 "정제연료유 또는 윤활기유의 원료물질을"로, "정제연료유·정제유기용제·재생연료유·고철"을 "정제연료유, 윤활기유의 원료물질,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또는 고철"로 한다.
개정문25	별표 9 제3호나목1)가) 단서 및 같은 목 8)가) 중 "폐목재 받침목"을 각각 "폐철도목재받침목"으로 한다.
개정문26	별표 14 나목의 자격기준란 중 "전기공사기사"를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로 한다.
개정문27	별표 16 제2호 중 "별표 4의2 별표 4의2"를 "별표 4의2"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철도용 폐받침목"을 "폐철도받침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선별·포장한 후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도록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table>
<tr><td>개정문28</td><td>별표 16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또는 노끈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나. 폐섬유, 폐의류 또는 폐원단을 의복, 침구 또는 가방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을 가방, 신발 또는 문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td></tr>
<tr><td>개정문29</td><td>별표 21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td></tr>
<tr><td>개정문30</td><td>별지 제49호서식 앞쪽의 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td colspan="13">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td></tr>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 종류 (분류번호)</td><td rowspan="2">㉢ 총 발생량 (톤/년)</td><td rowspan="2">㉣ 성질 상태</td><td colspan="2">㉤ 자가처리</td><td colspan="4">㉥ 위탁처리</td><td colspan="2">㉦ 보관량 (톤/년)</td><td rowspan="2">㉧ 처리 비용 (천원)</td></tr>
<tr><td>방법</td><td>처리량 (톤/년)</td><td>방법</td><td>구분</td><td>처리자</td><td>처리량 (톤/년)</td><td>이월 보관량</td><td>누적 보관량</td></tr>
<tr><td></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able>

개정문31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란"을 "㉣란"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란 및 ㉤란"을 "㉤란 및 ㉥란"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⑭란의 ㉠란은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⑭란의 ㉡란 및 ⑮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8. ⑭란의 ㉥란 중 구분란은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8] 해양배출업자, [9]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10] 공공처리(국가)시설, [11] 기타
개정문32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⑮란에서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합니다. 가.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 나.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
개정문33	별지 제5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⑨란 및 ⑩란에서 "잔재물"이란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개정문34	별지 제5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⑨란부터 ⑰란까지에서 "잔재물"이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2호나목·라목 또는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08.11.(단, 별표8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 2024.02.12.)., 환경부령 제1048호, 2023.08.11.,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문1	별표 8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문2	별표 11 제2호가목1)가)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법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한 처분용량 이내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승인·신고(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으며, 추가로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처분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문3	별표 11 제2호다목6)에 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법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한 재활용용량 이내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승인·신고(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재활용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04

부록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안
배출사업장 공통 체크사항
대기배출시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비산먼지 발생사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폐수배출시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참고사항

1. 부록의 체크리스트는 2023.10월 법령 기준으로 제작하였음
2. 최신 법령 조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법령 검색으로 가능하며, 법령준수를 위해 수시로 각 규정의 세부 내용 확인 필요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안

ㅇ 미세먼지, 악취 등을 저감하고,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향상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관리

- (청소의 날) 매월 넷째주 금요일(예시)
- (추진내용) 방지시설 소모품(세정수, 여과포 등) 교체, 사업장 및 방지시설 내·외부 청소 실시

□ 배출사업장 공통 체크사항

ㅇ 대기·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고장(부식, 훼손 등) 여부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소모품(세정수, 여과포, 활성탄 등) 교체

ㅇ 지정 및 일반폐기물 보관상태 확인

ㅇ 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점검 및 담당자 교육 실시

ㅇ 오염사고 대비 환경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하절기, 추석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환경관리 강화 협조 요청 공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수신 사업장(404개소)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하절기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강화 협조 요청

1. 평소 환경행정을 위한 귀 사(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청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기간('23.6월-8월)을 정하여 불법 환경오염행위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사업장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이에, 귀 사(기관)에서는 하절기 기간(특히 호우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기물 등 오염물질 관리 및 자체적인 환경관련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능동적인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운영 ·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환경관련시설 중점 점검사항

ㅇ 대기 ·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고장(부식, 훼손 등) 여부
ㅇ 지정 및 일반폐기물 보관상태 확인
ㅇ 불법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관리 취약시설 점검
ㅇ 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점검 및 담당자 교육 실시
ㅇ 오염사고 대비 환경청 · 지자체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끝.

대구지방환경청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수신 협조요청 대상 사업장(402개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강화 협조 요청

1. 평소 환경행정을 위한 귀 사(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23.9.21.-10.6.)을 정하여 추석 연휴동안 불법 환경오염행위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사업장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귀 사(기관)에서는 자체적인 환경관련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능동적인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운영 ·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환경관련시설 중점 점검사항

ㅇ 대기 ·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고장(부식, 훼손 등) 여부
- 대기방지시설 소모품(세정수, 여과포 등) 교체
ㅇ 지정 및 일반폐기물 보관상태 확인
ㅇ 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점검 및 담당자 교육 실시
ㅇ 오염사고 대비 환경청 · 지자체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ㅇ 불법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관리 취약시설 점검. 끝.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배출시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점검사항 · 확인사항	법 조항
	허가 · 신고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여부 확인** - 업종 및 시설 분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해당여부 확인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 법 시행규칙 별표 3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등	- (설치 허가) 법 제23조,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 법 시행규칙 별표 2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신고** - (대상) 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	- (설치 신고) 법 제23조,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4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변경허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증설,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 (변경 전 신고) 배출(방지)시설 증설 · 교체 · 폐쇄, 사용 원료 · 연료 변경, 그 외 허가·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 변경 - (변경 후 신고)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배출(방지)시설 임대(30일 이내), 사업장명 · 대표자 변경(2개월 이내) 등	-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변경신고) 법 제23조제2항, 법 시행규칙 제27조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의 경우, 가동 전 미리 가동개시 신고	- (가동개시 신고) 법 제30조 -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시행령 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6	**자가측정** - (자가측정 기록 및 보존) 1종·2종·3종 사업장 → 전산 / 4종·5종 → 운영기록부 및 전산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 6개월간 보존 -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상반기 측정결과는 7월 31일까지 /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전산 기록 및 보존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가측정) 법 제39조,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1 -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 방지시설 정상 운영(여과물 교체, 약품 투입 등) - (금지행위)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 희석, 공기 조절장치 및 가지 배출관 설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식 · 마모 방치,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및 기구류 고장 · 훼손 등 방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 (시설 운영) 법 제31조
8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 -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유무 - 측정기기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금지행위) 측정기기 부식·마모·고장·훼손 등 방치, 고의 훼손, 측정 결과 누락 및 거짓 작성 등	- (측정기기 부착) 법 제32조, 법 시행령 제17조 - (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방법) 법 시행령 별표 2(적산전력계 관련), 별표 3(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련), 별표 3의2(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련) -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법 시행규칙 별표 9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9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매일 기록, 전산 기록 및 보존 가능 - 최종 기록일로부터 1년간 보존	- (운영기록 보존) 법 제31조제2항, 법 시행규칙 제36조 - (운영기록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환경기술인	
10	**환경기술인 임명, 자격기준, 준수사항** - (최초로 배출시설 설치한 경우)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환경기술인 변경 임명하는 경우) 사유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준수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운영기록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 등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 (신규교육)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환경기술인 임명) 법 제40조 -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10 -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법 시행규칙 제54조 - (교육) 법 제77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125조

대기배출시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점검일: 년 월 일

점검항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항 **• 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명서)의 내용과 실제 시설 설치 사항이 다른 것이 없는가(변경허가, 변경신고)** - 새로운 배출시설 설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증설·교체·폐쇄 -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사용하는 원료·연료 변경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기타사항 변경(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사항, 일일조업시간 등 기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가 ※ 신고된 오염물질 이외에도 자가측정으로 확인 필요	□	□
•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을 하고 있는가	□	□
2. 배출시설 운영 및 관리 **• 제조공정 확인 사항**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서류 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 상태	□	□
•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부식 ·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장치* 설치 여부 * 공기 조절장치(댐퍼), 가지 배출관(바이패스 덕트) 등 - 가동중지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원인, 기간 등)	□	□
• 보일러, 기타사항 확인 - 점화용 보조 연료(가스, 경유 등) 사용 여부 - 지역연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저황유 사용 여부) - 연소물질(연료 등)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여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 확인 - 악취 발생물질 무단 소각 여부	□	□
3.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 **• 설치 여부 확인** - 방지시설 설치 여부 확인(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제외) - 허가(신고) 시 설계된 도면(규모, 용량, 위치 등)과 일치 여부	□	□

점검항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방지시설 가동 여부	☐	☐
– 기계 및 기구류(계량기, 각종 모터 등)의 성능 발휘 여부 –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방지시설 처리능력 비교 – 약품 적정량 투입 및 소모품(여과물 등) 정기 교체 여부 –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 – 가동 및 고장 수리에 관한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 관계 서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간과 적산전력계 가동시간 비교	☐	☐
• 오염물질 배출상태 확인 – 육안으로 매연 및 먼지 배출상태 확인 – 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 설치 여부 – 자가측정 실시 결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포함) 및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 총 배출구 수/시료채취 배출구 확인	☐	☐
• 측정기기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적산전력계, 유량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고장 · 훼손 방치 여부 등	☐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 매일 작성 및 결재권자 결재 확인 – 법정 서식에 맞게 기록 및 보존	☐	☐
4.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 사업장 종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적정 여부** –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및 자격기준 적정 여부	☐	☐
• 환경 전담 부서 근무 여부 – 자격증 대여 불가	☐	☐
•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 신규교육: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수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이수	☐	☐

체크합시다! 조치 필요사항

☐

☐

☐

비산먼지 발생사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대기환경보전법」

점검일: 년 월 일

점검항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법 제43조제1항, 법 시행령 제44조,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별표 13]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 부 ※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대상)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 제조업 · 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등	□	□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 사업장명 · 대표자 변경,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 증가 및 종류 추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등	□	□
2.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법 제43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및 별표 14]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에 기재된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	□	□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4] **〈분체상물질 야적〉** - (방진덮개)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 (방진벽) ①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 설치,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 또는 방진막 설치 ② 건축물축조 및 토목 · 조경 · 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 설치(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 3m 이상의 방진벽 설치) - (시멘트 제조업) ① 원료 및 연료: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 ② 보관시설 출입구 : 방진망 또는 방진막 설치	□	□
〈분체상물질 싣고 내리기〉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 설치 · 운영 -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 시멘트 제조업: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	□

점검항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수송〉 -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 설치 -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까지만 적재물 수평 적재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 공사장 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 운행 및 통행도로 1일 1회 이상 살수 실시 - 시멘트 제조업: 광산 진입로 임시 포장	□	□
〈이송〉 - 야외 이송시설은 덮개 등을 설치해 완전히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 흩날림 방지	□	□

체크합시다! 조치 필요사항

□

□

□

폐수배출시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물환경보전법」

	주요 점검사항 · 확인사항	법 조항
	허가 · 신고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배출,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1㎥ 배출 등	-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및 분류) 법 제2조제10호, 법 시행규칙 별표 4 -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시행규칙 별표 3
2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	- (설치 허가) 법 제33조제1항,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3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 (대상)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 허가 대상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 등	- (설치 신고) 법 제33조제1항,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4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변경허가) 폐수배출량 5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발생, 폐수무방류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등 - (변경 전 신고) 폐수배출량 50%증가, 사업장 종류 변경,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 배출(방지)시설 일부 폐쇄 등 - (변경 후 신고) 대표자·사업장명·소재지 변경, 배출(방지)시설 임대, 배출(방지)시설 전부 폐쇄, 위탁처리업체 변경, 검사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되는 경우 등	- (변경허가) 법 제33조제2항,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변경신고) 법 제33조제3항, 법 시행규칙 제38조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의 경우, 가동 전 미리 가동시작 신고	- (가동시작 신고) 법 제37조제1항, 법 시행령 제3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6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최종 방류수 수질 상태 확인(자가측정을 통한 적정 처리 확인) ※ 산업 · 농공단지는 별도배출허용기준(대구지방환경청 고시) 확인	- (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 법 시행규칙 별표 13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법 제46조
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 (금지행위) 방지시설 유입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가치 배출관 · 비밀 배출구 설치, 물 희석 행위,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 (시설 운영) 법 제38조
8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 -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설치 유무 및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여부 확인 - (금지 행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는 행위, 측정기기 부식 · 마모 · 고장 · 훼손 방치, 측정 결과 누락 및 거짓 작성, 측정값 조작 등	- (측정기기 부착) 법 제38조의2제1항,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 7 - (측정기기 부착 방법)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8 - (측정기기 금지행위 및 운영 · 관리기준) 법 제38조의3, 법 시행규칙 제50조
9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전산 기록 및 보존 가능 - 최종 기록일로부터 1년간 보존(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일지: 3년간 보존)	- (운영기록 보존) 법 제38조제3항, 법 시행규칙 제49조 - (운영일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서식
	물바로시스템 입력	
10	**수탁처리폐수 물바로시스템 입력** - (인계내역 입력) 폐수 위탁 전까지(수탁처리폐수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인계일부터 4일 이내에 인계내역을 확정하여 입력) - (인수내역 입력)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수탁처리폐수 전산 처리) 법 제66조의2제2항, 법 시행령 제79조의3 - (전자인계 · 인수관리시스템 입력)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환경기술인	
11	**환경기술인 임명, 자격기준, 관리사항** - (최초로 배출시설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 (환경기술인 변경 임명하는 경우) 사유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 (최초교육)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최초교육 후 3년마다 1회	- (환경기술인 임명 및 자격기준) 법 제47조,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17 - (관리사항) 법 시행규칙 제64조 - (교육) 법 제67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94조

폐수배출시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점검일: 년 월 일

점검항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항 **• 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명서)의 내용과 실제 시설 설치 사항이 다른 것이 없는가(변경허가, 변경신고)** -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또는 700㎥/일 증가 - 사업장의 종류(종별) 변경 -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의 변경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폐쇄 - 기타사항 변경(폐수 배출공정,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폐수 위탁업체 등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
•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을 하고 있는가	☐	☐
2. 배출 ·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 **•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현장 확인 - 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 훼손 여부 - 전력 사용량 및 기타 관계 장부 등 비교 검토	☐	☐
• 처리약품의 정상 투입 여부 확인 - 현장 확인 - 표준계산서에 의한 약품 구입량, 재고량, 투여량, 소모량 비교 검토(허위 기록 여부)	☐	☐
• 가치 배출관 ·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확인 - 폐수 누출 등 현장 확인 -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계도면 검토	☐	☐
• 최종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처리상태 육안 확인 - 채수(시료 채취) 및 수질 분석 - 기준 초과 시 과부하 여부, 처리공법 적정성 여부 등 검토	☐	☐
• 측정기기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고장 · 훼손 여부	☐	☐

점검항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보존 – 매일 작성 및 결재권자 결재 확인 – 법정 서식에 맞게 기록 및 보존	☐	☐
3.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 폐수 전량 위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폐수 저장시설 설치(폐수 5일분 이상 성상별로 보관, 눈금 등 폐수량 계측기 부착) ※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경우, 별도 저장시설 필요 없음 – 폐수수탁처리업자와의 폐수수탁처리계약서 작성 및 보관 – 물바로시스템에 폐수 위·수탁확인서 입력 – 관할 행정기관에 폐수위탁실적 보고(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
• 전량 재이용하는 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폐수 외부 배출 여부	☐	☐
4.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 사업장 종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적정 여부** –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및 자격기준 적정 여부	☐	☐
• 환경 전담 부서 근무 여부 – 자격증 대여 불가	☐	☐
•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 최초교육: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이수 – 보수교육: 최초교육 후 3년마다 1회 이수	☐	☐

체크합시다! 조치 필요사항

☐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폐기 물관리법」

	주요 점검사항 · 확인사항	법 조항
	허가 · 신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미리 확인(폐기물분석결과서 보관) ※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시행령 별표 1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법 시행규칙 별표 1 -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처리 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할 것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법 제17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폐기물 처리 기준) 법 제13조,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별표 5 -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 법 시행령 별표 4의2, 4의3
2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 -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 대상 여부 확인* 후 대상일 경우 시 · 도지사 및 관할 환경청**에 처리계획 확인(서류 제출) *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 (시 · 도지사) 공장 외에서 배출 시, (환경청) 공장(배출시설 설치)에서 배출 시	- (지정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확인) 법 제17조제5항,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 ~ 제7항 - (폐기물 처리계획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폐기물 분석결과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폐기물 수탁확인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 지정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30% 이상 증가, 새로운 지정폐기물 배출, 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및 처리자 변경, 사업장 상호 · 소재지 변경 등 →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류 제출	- (지정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변경확인) 법 제17조제6항,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 제8항 - (폐기물 처리계획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폐기물 위탁처리 경우
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1일 평균 300kg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대기, 폐수, 소음 ·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1일 평균 100kg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 → 대상일 경우 관할 시 · 군에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법 제17조제2항, 법 시행규칙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배출자 신고 미대상일 경우 폐기물 배출량 근거자료 보관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 사업장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 새로운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추가 배출,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사업장 상호 · 소재지 변경 등 → 사유 발생일 1개월 이내 관할 시 · 군에 서류 제출	- (변경신고)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폐기물 위탁처리 경우
	폐기물 처리 기준	
6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 기준 · 방법** - (수집·운반) 누출의 우려가 없는 설비 사용, 밀폐형 차량으로 운반 - (보관) 포장된 바닥 및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폐기물이나 침출수 누 ·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 - (보관 기한) 보관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위탁) **지정폐기물 처리 기준 · 방법** - (수집·운반) 누출의 우려가 없는 설비 사용, 밀폐형 차량으로 운반 - (보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포장된 바닥 및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폐기물이나 침출수 누 ·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 지정폐기물에 의해 부식·파손되지 않는 보관시설 · 용기 사용, 보관장소에는 보관표지판 설치 필요 - (보관 기한) 지정폐기물 종류별 상이 →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	-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법 제13조제1항,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7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 적정한 처리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법 제18조제1항 - (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 법 제17조제1항제3호
	올바로시스템 입력	
8	**사업장폐기물 인계 · 인수사항 및 처리실적 올바로시스템 입력** - (인계·인수) 배출자는 폐기물을 처리계획에 따른 운반자에게 인계할 때,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실적보고) 매년 2월까지 전년도 폐기물 발생 · 배출 · 처리실적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보고	- (폐기물 처리정보 전자 입력) 법 제18조제3항 - (인계 · 인수사항 및 입력 방법 · 절차)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6 - (보고서 제출) 법 제38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6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 교육	
9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 교육 이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최초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서류 최초 제출, 폐기물처리업 최초 허가, 폐기물 수집 · 운반 최초 신고의 경우 →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최초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재교육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 이수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 교육) 법 제35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 (교육대상자) 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점검일:　　년　　월　　일

점검항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폐기물 처리 전 확인 사항 **• 폐기물의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 (오니,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페인트, 폐유 등) **• 폐기물별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후 계약 체결 여부**	☐	☐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변경사항 **• 신고증명서(처리계획서)에 변경사항이 없는가** - 실적 보고한 폐기물 양이 신고한 폐기물 양보다 증가 -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 배출 - 폐기물 처리방법 및 위탁처리업자 변경 - 사업장 상호 · 소재지 변경	☐	☐
3. 폐기물 보관 및 처리 **•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여부** - 지붕과 벽면이 갖춰진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 (지정폐기물) 법정 양식의 보관표지판 설치 - 폐기물 종류 · 성상별 구분 보관 - 폐기물이 보관시설로부터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고,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지 확인 - 폐기물 법정 보관기간 이내 처리	☐	☐
•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적정처리하고 있는가	☐	☐
4. 올바로시스템 입력 **• 폐기물 처리 종류, 양 등 인계·인수내역 입력**	☐	☐
• 매년 2월까지 전년도 폐기물 발생 · 배출 · 처리실적 보고	☐	☐
5.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 교육 이수 **• 최초 교육: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최초 신고를 한 경우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서류를 최초 제출한 경우 등 • 재교육: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이수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 이수	☐	☐

체크합시다! 조치 필요사항

☐

☐

☐

2023 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

발 행 일 : 2023년 11월
발 행 처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인　　쇄 : 스마트인쇄 063) 241-3331